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일시

2020년 11월 3일(화)

오후 1:30~5: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주제발표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헤이그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변미희 교수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

한국고아사랑협회 이성남 회장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주관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 전국입양가족연대 /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아빠의 품)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 한국고아사랑협회 / InKAS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초대의 글

2019년 5월 제1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에 이어, 베이비박스 운영기관과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미혼부단체, 고아단체 등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가정보호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보호아동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은 가정보호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이 시설보호율에 두 배 가까이 뒤쳐진 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現지방자치단체는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기구운영을 통해 당사자들의 현실과 무관하게 행정 편의 중심으로만 체계화되어 있으며, 보호아동의 실질적 가정보호에는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현실과 사실에 입각한 대안과 정책, 제도 및 법률 마련을 위하여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실시하고자 하며, 당사자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순서/목차(Contents) -

순서	세부내용	페이지
개회	사회자 : 유보연 (前)YTN아나운서 개회사 :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인사말 : 김미애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환영사 : 주요 내빈 단체소개 :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I.주제발표	1.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헤이그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 ☞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17페이지
	2. 보호아동의 가정보호확대를 위한 대책방안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변미희 교수	29페이지
	3.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 ☞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	55페이지
II.사례발표	1. 베이비박스에서 바라본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방안 -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이대동 담당목사	71페이지
	2. 가정의 축복, 입양 - 전국입양가족연대 배지연 박사	83페이지
	3. 한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	103페이지
	4. 미혼부 가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	113페이지
	5.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제안서 - 선한울타리 설립자 최상규 대표	131페이지
	6. 내가 경험한 국외입양 -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정애리 회장	141페이지
III.종합토론 및 질문	참석한 관계자	

주관단체 / 개회사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자
생명사랑국민연합 공동대표
가정보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락

안녕하십니까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이 3% 밖에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할 부모가 없어서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이 없어서도 아니라 법과 정책, 행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마음이 저러왔습니다.

가난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극복할 수 있고, 상처는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으며, 배움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통해 지식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의 부족한 믿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통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있기 전 한해 평균 400여 명이 넘는 많은 영아와 아동들이 밖에서 유기되거나 죽음의 위기로부터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들을 살리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독교 정신과 가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2009년 12월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미혼모와 아기들의 피난처와 도피처로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11년간 현재까지 1800여 명의 위기 영아를 보호했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절박한 마음이었기에 국가의 지원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이비박스에서 아기의 생명만 보호하면, 다음은 국가가 나서서 당연히 보호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통해 안전하게 양육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올해 GDP 순위 10위인 선진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이 3%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아동의 미래와 행복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보호아동이 가정에서 자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생명이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호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법과 행정,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사각지대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보호아동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라는 자리를 통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입니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주제로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조오섭·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lnKAS(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고, 친생 부모와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 미혼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낳은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이들의 최선의 대안은 입양입니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의무화 등으로 국내 입양은 급격히 감소했고, 입양으로 가정에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시설과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은 철저히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 및 정책 제안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님, 백석대학교 변미희 교수님, 한국고아사랑협회 이성남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해 주고 계신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오늘 제2회 국회 가정보호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함께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과 조정훈 의원님,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InKAS(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보호아동과 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참혹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어땠을지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아동 학대는 이처럼 반복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대받은 아이들 대부분이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18 아동 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44%), 친모(30%) 등 부모이며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82%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조차 69%나 귀가 조치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원가족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족보호원칙은 원래 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막고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의 복귀’가 우선 되면서 분리가 필요한 학대 아동들까지 집에 보내지게 되면서 학대 방지 모니터링과 부모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없는 원가족보호원칙은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전근대적 인식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부모는 아이에게 더 이상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 중이고 관련 부처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지켜주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실에 입각한 대안과 정책, 제도 및 법률 마련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당사자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제2회 국회 가정보호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미애 의원님과 조오섭 의원님,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InKAS(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보호아동과 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엄청난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이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공동체는,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독거노인, 미혼모, 미혼부, 고아 그리고 부모의 학대를 받는 아동들처럼 소외된 우리 이웃을 가족처럼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입니다.

지난 6월 계모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감시 제도를 확충해야겠지만, 2차적으로 양질의 아동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가족의 사랑까지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 가정 내 학대에서 아이들을 구제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기능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양육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상 보호 조치된 아동 중 입양된 비율은, 2010년 16%이고 2011년 17%였으나 해가 갈수록 비율이 점점 떨어져, 2019년에는 3%만 입양되었습니다. 반면 학대, 부모의 빈곤, 실직 등의 사유로 보호 조치를 받는 아동의 비율은 2010년 54%, 2011년 52%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71%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입양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반사적으로 아동보호시설이 과포화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아동이 학대당하더라도 보호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정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아동인권 침해 감시제도와 입양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도입니다. 또한, 입양제도는 아동학대 이외에, 일가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또는 미아 발생 등의 이유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입양제도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 공동체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도록 노력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관단체 / 가정보호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전국입양가족연대 수석대표

가정보호 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오창화

반갑습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앞에서 섬기고 있는 다섯 자녀 중에 두 명을 가슴으로 낳은 오창화 아빠입니다. 저는 아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제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단어도 "아빠"입니다. 아빠의 역할은 가족 안에서 아내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응원하고 사랑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으며 이 이름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초 발의 준비 중이었던 입양법 전부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막기 위해서 입양가족들이 모여 만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2019년에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라는 이름으로 '제1회 국회입양컨퍼런스'를 주관하면서, 입양법과 입양현실을 중심으로 여러 깊은 논의를 하는 등 귀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입양의날 즈음에 계획했던 '제2회 국회가정보호컨퍼런스'는 "생명이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의 조치"를 위하여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한국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아빠의품),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약 3만여 명의 자녀들이 가정환경이 아닌 집단 보육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 또한 잠시나마 집단 보육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기에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고 계신 모든 아동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정보호를 외치는 이유는, 보육시설보다는 가정보호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은 모든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리 모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12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입양특례법의 독소조항으로 급증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경우, 후견인인 지자체의 조그만 관심과 성의만 있었다라도 모두 입양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0여 명의 아동이 부모의 품이 아닌 시설 선생님에 의해 양육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인 전국입양가족연대와, 베이비박스, 미혼모와 미혼부인 한부모단체, 시설 퇴소인단체, 그리고 해외입양인을 섬기는 단체들이 모여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찾고자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과 치열한 경쟁 사회로 인해서 쉽게 피해당할 수 있는 말 못 하는 아동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인 이 행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단체와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조그만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서,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관심 주시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응원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I. 주제발표

주제발표 1.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헤이그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

☞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주제발표 2. 보호아동의 가정보호확대를 위한 대책방안(안)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변미희

주제발표 3.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

☞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주제발표 1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헤이그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

-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 헤이그 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

박성민¹⁾

1. 발표 요지

저는 오늘 어쩌면 매우 상식적인 내용을 발표하려 합니다. 보호아동에게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1) 원가정 보호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2) 그것이 어려운 경우 국내 입양을, 3) 그것도 어려울 경우 국외 입양을, 4) 그것도 어려울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시설 등 가정이 아닌 보호기관에서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가정, 국내 입양, 국외 입양, 시설에서의 보호는 정상적인 보호를 의미하며 학대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아동을 동일하고 일의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해 우리 법과 제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이 1)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워져 가정보호가 지연되는 (그래서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 국내 입양, 차선적으로 3) 국외 입양이 필요하며, 보호아동 보호의 마지막 수단인 4) 시설과 같이 가정이 아닌 보호기관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수와 그러한 기관에서의 보호 기간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고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1993) 역시 그러한 입장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매우 상식적인 내용을 시간을 들여 발표하는 이유는 보호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그 운영 사항 중에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위 1) > 2) > 3) > 4)의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거나 법령 명분상으로는 그 원리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에 따라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2) 국내 입양이나 위 3) 국외 입양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아동들이 위 4) 시설과 같은 가정이 아닌 보호기관에서 보호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상식, 즉,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 변호사, 법학박사

2. 보호아동의 보호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 탐구의 필요성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 대하여 이견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소라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경인출판사(2020)는 글의 제목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이지만, 정작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선행하자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마치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에서 어린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양이 들어있는 상자를 그려주니 어린왕자가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야기와 같이 정형화 또는 구체화할 수 없는 본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나.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1993)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3. 5. 29. 헤이그 국제 사법 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 5. 1. 발표한 다자간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입양아동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2013. 5. 서명하였습니다(아동 권리보장원 사이트 설명). 우리나라에서 2017. 10.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후 국회 비준을 위한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은 당사국이 100개국이 넘고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에서 어떠한 원칙과 입장을 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

약은 국내 아동 양육 및 보호 체계 발전, 국제 입양에 대한 윤리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접근을 뒷받침해 주는 기본 원칙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²⁾

헤이그 국제 사법 회의가 2008년에 출판한 「1993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한국어 번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에서 발간한 번역본에 있는 번역임, 이하 같음).

아동 최선의 이익은 각 사례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다양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는 국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해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되어야 함. 협약에 포함된 이러한 요건들은 아동을 친가족과 유지시키거나 재결합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내의 해결책을 먼저 고려하고(보충성의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입양에 필요한 동의 여부 획득 확인,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정보 보존,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면밀한 평가, 적합한 가정에 아동 결연, 입양 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망 구축, 전문적 서비스 제공. 설명서(The Explanatory Report) 제50항에서는 “ ‘최선’ 이라는 단어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인하여 일부 건전한 입양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선’ 이라는 단어는 해당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혹은 ‘진정한’ 이익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³⁾

2) “At the heart of the matter are the child’s best interests, which must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child care and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an ethical, child-centred approach to intercountry adoption” -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No.1

3)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term is not defined in the Convention because the requirements necessary to mee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ay vary in each individual case,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ould not, in principle, be limited. However, a number of essential factors are referred to in the Convention and must be included in any consideration of wha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n intercountry adoption. These factors, taken from the Conventio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efforts to maintain or reintegrate the child in his/her birth family; a consideration of national solutions first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nsuring the child is adoptable, in particular, by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정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협약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감안하는 필수 요소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을 친가족과 유지시키거나 재결합하는 해결책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나 이때 ‘최선’을 엄격히 해석하여 건전한 입양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선’은 해당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혹은 ‘진정한’ 이익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아동보호와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의 헤이그 협약 설명서(Explanatory Report to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에서는 ‘Besides, it was observed that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word “best” might render impossible some good adoptions and to avoid such undesirable result, it should be construed as meaning the “real” or “true” interests of the child.’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원가정 보호입니다. 그래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리를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 아동이 놓인 상황을 도외시하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원가정 보호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해석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아동은 원가정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유기된 아동 중에는 원가정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이 분명한 아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동에게 ‘최선’이 원가정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기만 하고 그 아동이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정한 최선의 이익인 좋은 입양(‘some good adoption’)을 통한 가정보호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리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정 보호만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이지 않고 진정하지 않은) 엄격한 해석에 착념하여, 어떠한 아동에게는 실질적으로 혹은 진정으로

establishing that necessary consents were obtained; preserving information about the child and his/her parents; evaluating thoroughly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matching the child with a suitable family; imposing additional safeguards where necessary to meet local conditions; providing professional services. The Explanatory Report notes, at paragraph 50, that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word ‘best’ might render impossible some good adoptions and to avoid such undesirable result, it should be construed as meaning the ‘real’ or ‘true’ interests of the child.”

최선의 이익이 되는 입양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은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children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영구 조치는 임시 조치보다 선호된다(permanency is preferable to temporary measures).”, “국제 입양은 출신국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 가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intercountry adoption may offer the advantage of a permanent family to a child for whom a suitable family cannot be found in his or her State of origin).”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시하는 주요한 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 원칙에 대한 「1993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의 설명입니다.

047. “보충성”은 협약의 당사국이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친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친가족 또는 친인척의 양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출신국 내에서의 기타 형태의 영구적인 가정 양육을 고려해야 한다. 출신국 내 가능한 조치가 모두 고려된 후에 국제 입양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일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국제 입양이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입양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열려있는 양육 선택사항 중 하나이다.

048. 보충성의 원칙은 협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이는 아동의 가족이 유지되거나 재결합 하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출신국 내에서 입양 또는 양육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국제 입양 절차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통합 아동보호 및 양육시스템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국제 입양을 통한 영구적인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아동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가정이 없는 각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계획이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정책은 국제입양의 저지보다 원가정 보호와 국내 해결책 강구를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050. 협약은 출신국 내 아동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모든 배치 가능성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이는 비현실적이며 당국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아동을 위한 국외의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가능성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

051. 보충성의 원칙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친인척에 의한 영구 보호는 바람직하나, 양육자가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양육에 부적합하거나 해당 아동의 필요(의료 요구 등)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국내 입양 또는 기타 영구적인 가정 양육이 바람직하나, 적절한 국내 입양가정이나 양육자가 부재하고, 해외에 영구 배치할 수 있는 적합한 가정이 존재할 경우 아동을 시설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출신국에서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는 것은 긍정적이나, 대부분의 경우 출신국 내의 가정에서 임시적으로 양육되는 것은 해외의 영구 가정에서의 양육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다.
- 영구 보호의 옵션으로서의 시설보호는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

053. ‘보충성’의 정확한 해석은 국제 입양을 ‘마지막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이는 협약의 목적이 아니다. 영구적으로 시설에 남아있거나 여러 임시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등의 국내 해결책은 대부분의 경우, 국제 입양보다 우선시 되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보호를 ‘마지막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은 아동 보호의 마지막 수단이 국내 입양이나 국제 입양이 아니라 시설보호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누차 강조 드리지만 여기서 원가정, 국내 입양, 국제 입양, 시설보호는 정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대 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학대 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국제 입양이 아동 보호의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기존의 논의 중에는 시설보호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 입양이 아동 보호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도 보이는데,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시설보호에 관하여 일부러 눈을 감은 것이라면 학문적인 양심이나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심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운영 결과 원가정 보호나 국내 입양, 국제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가 많아지거나 그 시설보호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우리 법과 제도 또는 그 운영이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3. 우리 법과 제도가 보호아동 보호 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의 입장에 따르고 있는지

가. 현행 입양특례법 제8조의 표현

현행 입양특례법 제8조는 국외입양의 감축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서 살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그 시설보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국외 입양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시설보호의 감축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가 시설보호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제7조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는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 하며 국내 입양보다는 국제 입양을, 국제 입양보다는 시설보호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2019)의 지적

이렇게 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줄이고 더 많은 보호아동들이 정상적인 가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감사원은 2019년 유기아동, 학대아동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 지원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감사초점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시설보다는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따른 보호(입양 > 가정위탁 > 시설입소 등)를 위해 입양 대상 등 선정, 의뢰 절차와 최초 보호조치 후 별경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 업무처리 매뉴얼에 입양은 부모가 의뢰한 아동에 대해서만 절차를 정하고 부모가 없는 유기아동은 시설보호만 제시하여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입양, 가정위탁 등의 변경조치를 위한 절차도 없어서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조치가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보호 비중이 2014년의 41.9%에서 2018년 37.4%로 감소하였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양기관 간 입양수수료 배분이나 사후관리기관 지정 등을 위한 기준이 없고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관리가 부실하여 입양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결연사례가 거의 없어서 입양대상아동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애착형성단계 이론⁴⁾에 따르면 아동은 생후 1년 이내에 특정 대상과 상호의존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므로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입양 대기 기간을 단축하여 최대한 일찍 예비양부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도, 입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수와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최근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오히려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우리나라 입양 관련 법과 제도 및 그 운영이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4. 제언

일반적으로 입양보다 원가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보다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와

4)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애착형성단계 이론(Bowlby, 1969)에 의하면 영아의 애착발달단계를 4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전 애착단계(출생~6주) → 애착형성단계(6주~8개월) → 애착단계(8개월~18개월) → 상호관계 형성단계(18개월~2세)로 나누어지며, 아동의 애착형성단계는 생후 6주부터 8개월까지로 애착형성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향후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식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입양특례법을 비롯하여 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이러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든 생각은, 모든 논자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논자에 따라서 전제하거나 염두에 두는 아동의 그룹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미혼모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동이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불행 또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국내 입양 절차를 효율화한다면 애착형성단계 등 조기에 국내로 입양이 되어 가정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가정 보호는 물론 국내 입양도 어려워져서 국제 입양을 하지 않으면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유형의 아동만 전제하거나 염두에 두고 다른 유형의 아동은 애써 외면하고 논의를 할 경우 다른 유형의 아동을 전제하거나 염두에 둔 의견과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놓인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현행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 제1항). 그런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입양이 되도록 하려면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이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 제1항).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 동의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을 양육하지도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원할 경우에는 아동을 유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이 큰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상황을 면하고 발견될 경우 시설로 보호조치되는데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조치가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때 그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착형성단계 등 조기에 국내 입양이든 아니면 국제 입양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거나 또는 계속 시설에 남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친생부모가 비밀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거나 또는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조기에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장의 조치를 촉구하거나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해서도 원가정 보호만을 주장하면서 아동을 시설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법과 제도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그 아동을 시설에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이 놓인 상황에 맞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이행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법과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주제발표 2

보호아동의 가정보호확대를 위한 대책방안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변미희 -



제2회 국회 개인정보 컨퍼런스

보호아동의 개인정보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변미희

목차

1. 보호아동 가정보호의 개념
2. 보호아동 가정보호의 현황
3. 보호아동 가정보호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보호대상아동의 개념

보호대상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가정보호의 개념

가정위탁 보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춘
입양가정으로 입양된 아동

가정보호 vs 시설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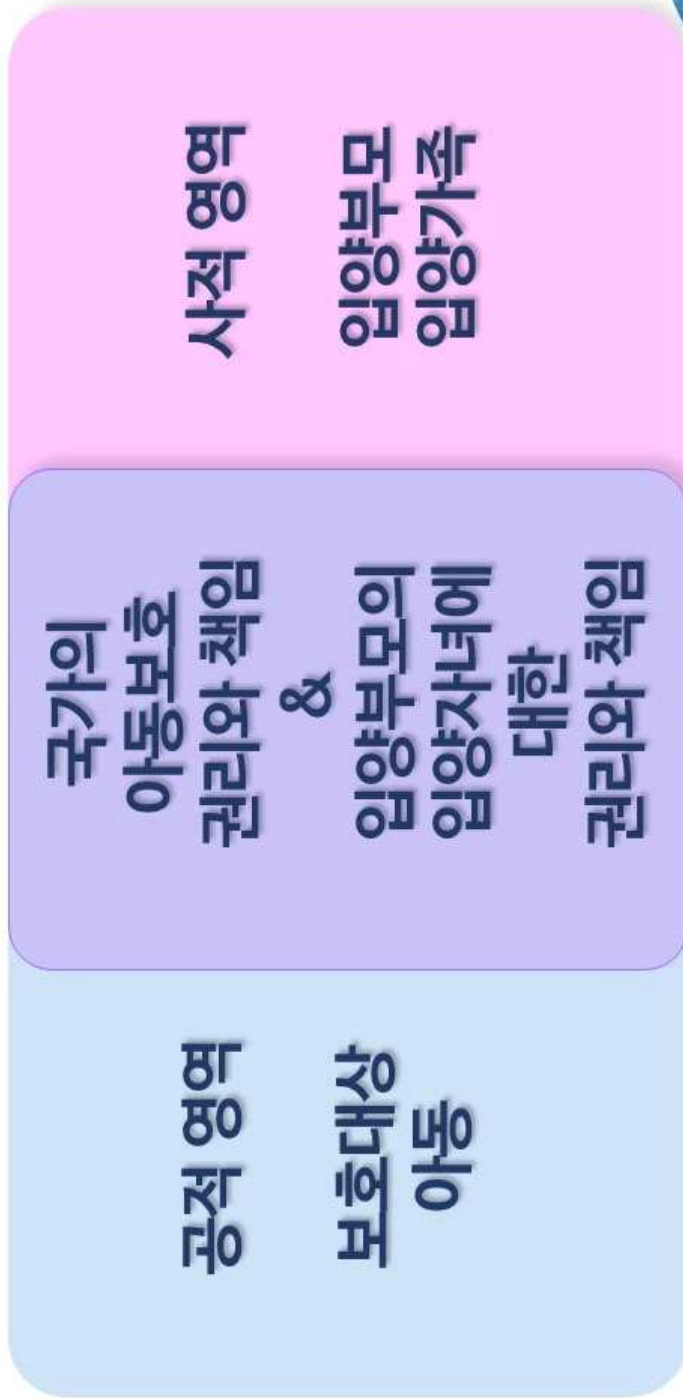
가정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입양의 특성



보호대상아동 보호현황

구분 Classification	계 Total	발생유형 Types of occurrence					학대, 부모빈곤·실직 등 Abuse, Poverty, Jobless, Abuse
		유기 Abandoned children	미혼부모·혼외자 Unmarried Parents, Out of wedlock	미아 Lost children	비행, 기절, 무랑아 Delinquent, Runaway children, others	802	
2006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	9,284	202	2,349	151	706	5,876	
2009	9,028	222	3,070	35	707	4,994	
2010	8,590	191	2,804	210	772	4,613	
2011	7,483	218	2,515	81	741	3,928	
2012	6,926	235	1,989	50	708	3,944	
2013	6,020	285	1,534	21	512	3,668	
2014	4,994	282	1,226	13	508	2,965	
2015	4,503	321	930	26	360	2,866	
2016	4,583	264	855	11	314	3,139	
2017	4,125	261	847	12	227	2,778	
2018	3,918	320	623	18	231	2,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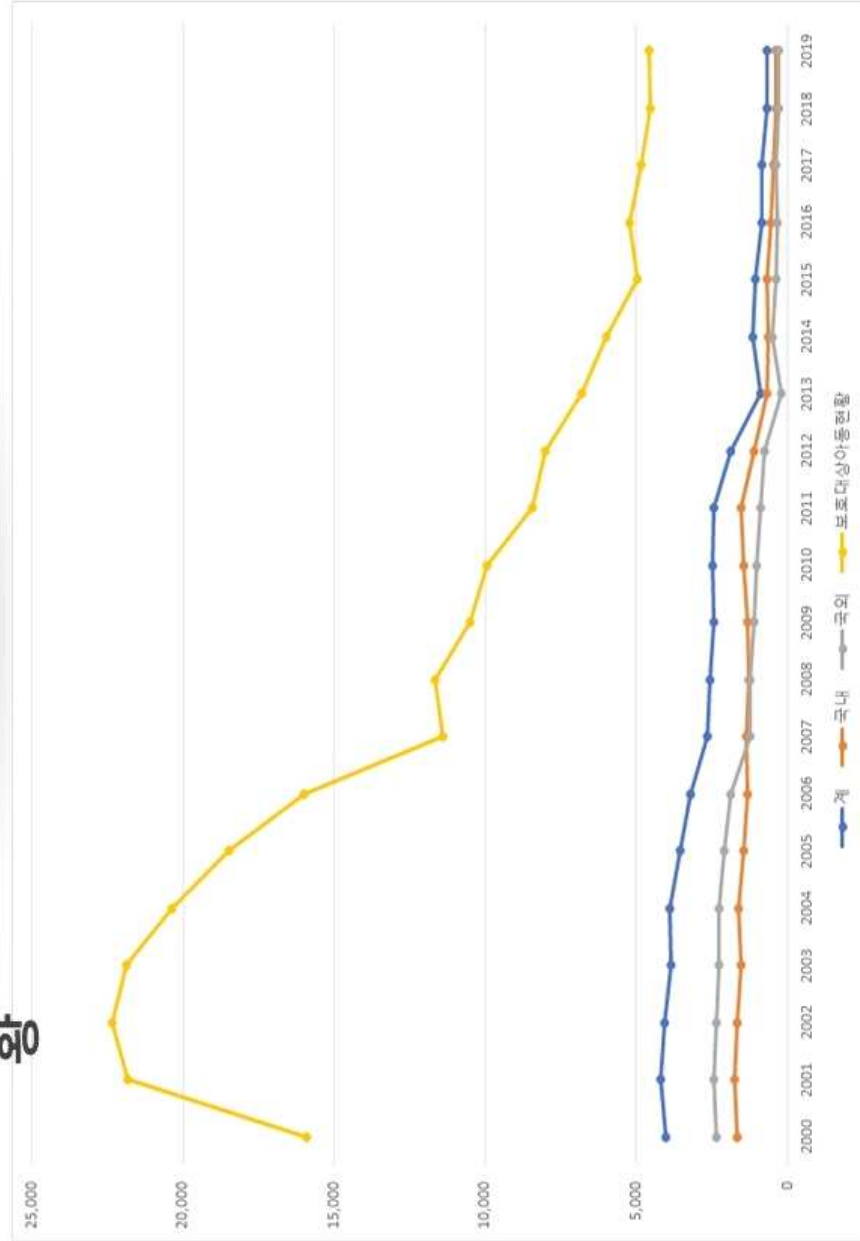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 보호현황

구분 Classification	보호 내용 Results of Protective measures						
	시설보호 Institutional care			가정보호 Home care			
	양육시설 등 Child Rearing facilities, etc	장애아동시설 Disabled Children's facilities	공동생활가정 Group home	기정위탁, 입양전위탁 Foster care	입양 Adoption	소년소녀가정 Child-headed households	
2006	4,313	53	-	3,101	1,259	308	
2007	3,189	39	17	3,378	1,991	247	
2008	4,258	39	667	2,838	1,304	178	
2009	4,046	35	686	2,734	1,314	213	
2010	4,196	23	623	2,124	1,393	231	
2011	3,108	32	612	2,350	1,253	128	
2012	2,948	25	775	2,289	772	117	
2013	2,532	39	686	2,265	478	20	
2014	2,384	10	506	1,688	393	13	
2015	2,211	13	458	1,582	239	-	
2016	2,284	11	592	1,447	243	6	
2017	1,777	19	625	1,417	285	2	
2018	1,794	7	648	1,294	174	1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과 국내외 입양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호아동	15,936	21,816	22,341	21,882	20,357	18,468	16,008	11,394	11,672	10,500
입양합계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2,652	2,556	2,439
국내입양	1,686	1,770	1,694	1,564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국외입양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호아동	9,960	8,436	8,003	6,834	6,014	4,975	5,221	4,850	4,538	4,612
입양합계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국내입양	1,462	1,548	1,125	686	637	683	546	465	378	387
국외입양	1,013	916	755	236	535	374	334	398	303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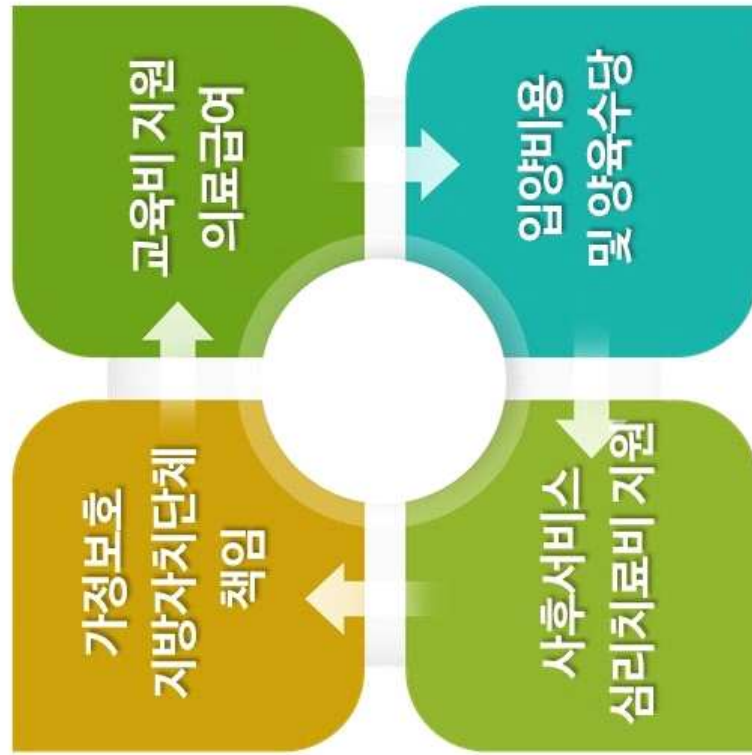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과 국내외 입양현황



정책 현황: 입양관련 법의 연혁

분류	입양 제도화	국내 입양 제도화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의 내실화
법	고아입양 특례법	1976년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 입양특례법
기간	1961~1975	1976~1994	1995~2011	2012-현재

입양아동과 가족 지원



입양제도 및 지원 연혁

법	연도	내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4년	보호방법 중 가정보호사업과 “입양”을 우선시 하도록 목차의 순서를 시설보호사업보다 앞으로 변경 됨 1. 가정보호사업 입양, 가정위탁보호 2. 시설보호사업
	2005년	입양아동의료급여 도입, 입양가족 단체 육성(2012년까지)
	2006년	(200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도입
	2007년	입양비용 지원, 양육수당 도입(13세 미만 월 10만원) 양친 자격 완화(연령 완화, 독신자 입양)
	2009년	기본방침에서 가정보호 강조 추가, 양친자격 강화(정신병력, 아동학대 및 범죄 전력이 없을 것) 중앙입양원 설립
	2010년	기본방침에서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위한 지자체 협조 추가
	2012년	양육수당 인상 13세 미만 월 15만원, 2014부터 1세 씩 상승함 2020년 만17세 미만
입양 특례법	2013년	(2012년 입양특례법) 입양속려제도, 양친 자격 강화(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 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예비부모교육,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 친양자 입양 신고, 사후서비스 도입

스웨덴 · 프랑스 · 독일 사례: 아동양육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김미곤 외(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국 사례

위탁보호 아동을 입양할 경우
위탁보호비용 지원

: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나이든 아동, 장기간 위탁보호에 있는 아동
장애아동,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등

<https://www.nacac.org/resource/eligibility-benefits-federal-assistance/>

1)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출산, 육아휴직 보장
- 임신부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탄력근무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아동 수당 확대

2) 출산통보 제도화

보호(익명) 출산
출산통보 제도화
(2019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

3)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 기회 확대

위탁보호 및 시설보호아동

↑
위탁보호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입양 기회 제공

↑
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입양시
위탁보호시 지원과 동일하게 유지

3)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 기회 확대

2019년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2019년 합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8,955	5,831	2,357	767
2019년 신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1,148	703	344	101

보건복지부(2020). 가정위탁보호현황

3)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 기회 확대

2019년 시설보호아동 현황

2019년			
시설 수(개소)	입소자 (명)	퇴소자 (명)	연말 현재 수용자 (명)
281	3,776	4,304	11,665

보건복지부(2020).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4) 입양 과정과 사후관리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입양기관의 역할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강화
- 가정 법원의 역할 강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결연
입양부모의 준비도
- 사후관리 강화

4) 입양 과정과 사후관리의 강화

사후관리 강화 방안



5) 입양 사후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

-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후서비스 제공
- 온라인 활성화 등으로 접근성 강화
- 위기 입양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감사합니다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주제발표 3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

-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 -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

I. 들어가기

1. 고아원, 보육원, 보육시설...

고아란 고려 시대에는 고아를 사원에 집단 수용해서 보호했다. 조선 정조 때는 아동보호를 법으로 공포해 고아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현대적 의미의 고아 시설은 조선 말엽인 1888년에 세워진 천주교 고아원이 시초다. 그 뒤로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고아원 23곳이 설립돼 2,192명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1980년 연말 기준으로 수용자 72,982명으로 고아의 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1985년부터 양부모(養父母) 결연 사업, 가정위탁 양육 사업, 해외 입양 사업 등의 확대로 고아의 수가 차츰 감소 국면을 보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표 1> 지난 10년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대상 아동 발생 수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2009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990	2,240
201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975	2,015
2011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690	1,695
2012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699	1,675
2013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678	1,535
2014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515	1,037
2015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423	1,070
2016	4,592	264	856	10	314	1,540	290	412	906
2017	4,121	261	850	12	229	1,437	216	362	754
2018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376	737
2019	4,047	237	464	8	473	1,484	265	380	736

출처: 보건복지부(각연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2019년 3분기의 출산율이 0.88명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던져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보호 대상 아동은 왜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 초고속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지만, 올해 초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모에 의해 죽은 아동의 소식이 자주 들려왔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하였다. 지적 장애를 앓는 미혼모가 갓 낳은 딸을 텃밭에 유기한 사건부터 어느 외진 주차장에서 몰래 버려져 숨진 신생아, 중학생인 딸을 성폭행하여 그 딸이 낳은 갓난아기를 유기한 비정한 아버지까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은 학대, 부모 이혼, 미혼 부모와 혼외자 순이다. 이는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원인이 대부분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아동을 발생하게 하는, 즉 아동이 가정 외 보호 체계로 진입하게 하는 가족 문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 타인과의 애착 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원철, 이화명, 2013; Courtney & Zinn, 2009; Leve et al. 2012). 특히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대나 가정 폭력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 및 정신·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dom, Szaja, Bentley & Johnson, 2012; Felitti & Anda, 2009; Gold, Salus, Wolcot & Kennedy, 2011; Perry, 2012; Tarullo, 2012). 따라서 아동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자립 지원이 아동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2>는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치 현황이다.

<표 2> 지난 10년간 보호 대상 아동 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가정보호					시설입소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합계	아동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공동 생활 가정	합계
2009	9,028 (100%)	213 (2.4%)	1,314 (15%)	2,734 (30%)		4,261 (47%)	2,406 (27%)	1,640 (18%)	686 (8%)	4,732 (52%)
2010	8,590 (100%)	231 (2.7%)	1,393 (16%)	2,124 (25%)		3,748 (44%)	2,445 (28%)	1,751 (20%)	623 (7%)	4,819 (56%)
2011	7,483 (100%)	128 (1.7%)	1,253 (17%)	2,350 (31%)		3,731 (50%)	2,246 (30%)	862 (12%)	612 (8%)	3,720 (50%)
2012	6,926 (100%)	117 (1.7%)	772 (11%)	2,289 (33%)		3,178 (46%)	2,272 (33%)	676 (10%)	775 (11%)	3,723 (54%)
2013	6,020 (100%)	20 (0.3%)	478 (8%)	1,749 (29%)	516 (9%)	2,763 (46%)	1,731 (29%)	801 (13%)	686 (11%)	3,218 (53%)
2014	4,994 (100%)	13 (0.3%)	393 (8%)	1,300 (26%)	388 (8%)	2,094 (42%)	1,818 (36%)	566 (11%)	506 (10%)	2,890 (58%)
2015	4,503 (100%)	0	239 (5%)	1,206 (27%)	376 (8%)	1,821 (40%)	1,412 (31%)	799 (18%)	458 (10%)	2,669 (59%)
2016	4,583 (100%)	6 (0.1%)	243 (5%)	1,022 (22%)	425 (9%)	1,695 (37%)	1,736 (38%)	548 (12%)	592 (13%)	2,876 (63%)
2017	4,125 (100%)	2 (0.05%)	285 (7%)	994 (24%)	423 (10%)	1,704 (41%)	1,467 (36%)	310 (8%)	625 (15%)	2,402 (58%)
2018	3,918 (100%)	1 (0.03%)	174 (4%)	937 (24%)	357 (9%)	1,469 (37%)	1,300 (33%)	494 (13%)	648 (17%)	2,442 (62%)
2019	4,047 (100%)	5 (0.1%)	104 (3%)	1,003 (25%)	196 (5%)	1,308 (32%)	1,707 (42%)	401 (10%)	625 (15%)	2,733 (68%)

출처: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 통계연보(2020)』

2009년에 비해 2019년에는 보호 대상아동수가 4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보호 대상아동수의 68%가 시설로 입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보호를 우선시 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호에 많은 아동이 배치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별화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양하고 되도록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하여 왔으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위탁가정의 수와 입양 가정의 수, 와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양육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오히려 입양과 가정위탁 보호가 위축되어 시설 중심의 보호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설 입소는 아동이 원가정으로의 복귀 시간이 길어지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입소 아동이 보호 종료가 되고 자립 시점에서 같이 반드시 같이 고려 해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그 많은 아이들은 퇴소 후 어떻게 살까?

보호 대상 아동은 대부분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만 18세가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데, 이 중 나이도 달로 인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매년 약 2천 명 이상에 달한다. 가정 외 보호 아동들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립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은 그동안의 보호시설과는 달리 보호 밖의 다른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며,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이들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인 이들의 자립은 일반아동의 자립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0년 7월에 발표한 ‘2018아동자립지원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만기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은 2,606명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상자는 12,707명이다.

<표 3>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준 대상자 현황

구분	계	자립 수준				
		진학 (학위과정포함)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2014	2,282 (100%)	89 (3.90%)	696 (30%)	26 (1.1%)	205 (9%)	1,266 (55%)
2015	8,590 (100%)	133 (1.55%)	784 (9%)	60 (0.7%)	302 (4%)	1,284 (15%)
2016	7,483 (100%)	244 (3.26%)	925 (12%)	32 (0.4%)	141 (2%)	1,054 (14%)
2017	6,926 (100%)	339 (4.89%)	1,089 (16%)	149 (2.2%)	529 (8%)	525 (8%)
2018	6,020 (100%)	185 (3.07%)	1,041 (17%)	51 (0.8%)	823 (14%)	236 (4%)

<표 3>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대학 진학률이 74%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락 두절이 된 인원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 직업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 종사자(25%)였으며, 그 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3%), 장치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9%), 사무종사자(12.8%), 단순 노무 종사자(11%), 판매종사자(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6.5%), 관리직 종사자 (3.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0.6%) 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 원~170만 원 (18.8%), 171만 원~200만 원 (29.1%)로 총 4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 최저급여 1,795,310원 미만은 51.1%나 된다. 기초 생활 수급의 경우 2014년 12.9%에서 2018년 39.3%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거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LH지원을 이용한 인원이 41.8%로 가장 이용수가 높았지만, 정부 지원 외로 월세, 고시원, 친구 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21%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 퇴소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부모생존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 미혼·동거상태의 출산을 경험하며, 건강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주거가 불안정하며 진학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많으며, 자립 생활기술 및 대인 관계기술이 부족하고,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정애, 2018).

2. 보육원시설 퇴소인이 자립하는데 미치는 요인들

(1) 위험요인

오늘날은 교육, 취업, 주거 등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 가정 내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부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퇴소인은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이 아주 짧은 데 비해, 주거, 일상생활, 자기보호, 돈 관리 등 주요한 과업들을 한꺼번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보육원 퇴소 직후 경험하는 어려운 점으로는 생활비나 주거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취업과 진로, 사회생활 적응, 심리적 부담감과 거주할 집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보호 청소년은 입소 전부터 부모와의 분리 경험 때문에 분노와 불안, 상실로 인한 슬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열등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가질 수 있다(홍봉선·남미애, 2007). 이렇게 자립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퇴소하게 됨으로써 보육원 퇴소 청소년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다양한 생활 속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문제는 높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손경숙·변상해, 2007), 가정 외 보호 청소년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욕구를 충족할 경제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소외를 느끼거나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유안진 외, 2002)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시설 청소년의 분노 표출 공격, 언어적 공격, 대인 공격 행동, 대물 공격 행동 등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시설에서 생활하기 전·후로 많은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여 우울 불안과 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울감이 높은 보호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이 낮은 보호 청소년에 비해 금전 관리기술, 위생관리 등 자립 생활기술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장윤정, 2013). 우울, 공격성, 낙인감 등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가 자립과 향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강현아 외, 2009; 우유라·노충래).

(2) 인구 사회적 특징

가정 외 보호 퇴소 청년들은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퇴소 청년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간다. 지역사회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립 지원 전달체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므로 지자체별로 자립지원금의 규모나 범위가 다르며, 대부분 기관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대학입학금도 지원금액이 100~5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지자체에 따라서 자립정착금이 백만 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높은 고교중퇴율과 낮은 진학률 등을 경험한다. 강현아 외(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진학 여부에 따라 성인 전환 단계의 자립과 사회 적응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실제로 학력에 따라서 자립과 사회 적응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3) 차상위계층에서 빈곤층으로, 그리고 사회 부적응

퇴소 청년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립과 사회 적응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시설 퇴소 직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도에는 약 40% 즉 6,020명 중 2,408명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집객이 되었다. 또한, 빈곤층으로 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수급자 중 퇴소 후 6개월 만에 89%가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2,143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최근 중위소득 50~150% 소득계층이 2015년 69.5%에서 2019년 59.9%로 하락했지만,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50% 미만 소득계층은 같은 기간 12.9%에서 17.0%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한 빈곤층 4%의 안에 보육원 퇴소 청년이 속해 있을 리 만무하다. 빈곤층인 이들이 중위계층이 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보육원 퇴소 청년들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청년기를 맞이하고, 빈곤층으로 중·장년기를 살다가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 외에도 사회의 편향적인 시선 또한 만만치 않다. 미디어 속에서 그리는 고아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불우한 환경 탓에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큰 야망을 품어 배신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인물, 즉 잔혹한 괴물로 그려진다. 사

실, 미디어 속 모습은 허구라고 하지만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는 사회 모습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결국,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고아’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고아’에 대한 편견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보육원 퇴소 청년들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도 많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못하였고, 단체생활을 하며 양육되었기에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 사회생활을 하며 눈치껏 배우는 경우가 많다. 가정생활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자란 성장환경의 다름으로 인해, 가난으로 인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또한 최근 들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원가정에서의 학대나 가정 폭력의 경험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조사이긴 하나 2017년 자립 준비 프로그램 대상 아동 관련 종단 연구 (Fryar, G., Jordan, E., & DeVoght, K. (2017). Supporting Young People Transitioning from Foster Care: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Child Trends.)에 따르면 약 25%가 성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는데,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전쟁 참전 용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 비율이 1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인지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 중 20%가 우울증을 겪었으며, 71%나 되는 여성이 21세가 되기 전에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자립 준비 프로그램 대상 아동들이 사회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및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2020년 경찰청에서 학생 범죄자 중 미혼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부모와의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꾸준하게 실 부모 범죄자와 비교해, 무 부모 범죄자 이육(利慾) 범죄의 비율이 낮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육 범죄 중 무 부모 범죄자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실 부모 범죄자에 비해 적게는 7%, 많게는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통계로는 무 부모 범죄자가 보육원 학생이라는 근거로는 빈약하다. 하지만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문제와도 큰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통계이다.

<표4>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실부모, 계부모, 실 부 계모, 실 부 무모, 실 모 계부, 계부 무모, 계모 무부, 무 부모)에서 무 부모의 범죄자가 이육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생활비마련범죄 역시 무 부모인 범죄자가 가장 비율이 높다.

또한, 이육 범죄에 해당하는 생활비, 유흥비, 도박비, 허영 사치, 치부 등으로 보았을 때 무 부모 사람들의 심리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표 4> 연도별 학생범죄자 이육범죄와 부모와의 관계

구분	실(양) 부모	이육(利慾) 범죄	이육 범죄 중 생활비 마련
	무 부모		
2014	59,849(100%)	7,660(13%)	1756(23%)
	1,225(100%)	247(20%)	75(30%)
2015	64,224(100%)	8,907(14%)	2,062(23%)
	1,223(100%)	1,223(25%)	93(31%)
2016	62,003(100%)	8,609(14%)	1,952(23%)
	1,168(100%)	273(23%)	95(35%)
2017	57,989(100%)	7,502(13%)	1,849(25%)
	1,051(100%)	221(21%)	78(35%)
2018	55,383(100%)	5,027(9.1%)	1,500(30%)
	752(100%)	116(15%)	43(37%)
2019	54,748(100%)	5,027(9.2%)	1,510(30%)
	597(100%)	89(14.9%)	45(51%)

출처: 경찰청(2020), 『경찰범죄통계: 자료갱신일 2020년10월05일』

4. 보호 대상 아동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업무 매뉴얼

아동 관련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개입은 정당성을 가진다. ‘아동 최우선 이익의 관점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동의 권리이므로(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동법 제4조 3항). 따라서 ‘보호 대상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를 통해 ‘가정 외 보호’를 할 때,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68%의 아동이 시설보호로 조치 되었다. 이러한 시설입소의 편중은 국가의 책무가 현실에서는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학대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다 나중에 노출되는 등 보호 아동의 문제상황도 우려할 상황들이 많다.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이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해야 하고, 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게 해야 한다. 국가책임을 수행하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며(제3조), 아동 이익이 자신들의 기본 관심사

5) 시설보호 아동의 아동학대는 2018년 기준 357명으로 전체 학대피해사례의 1.5%이지만(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시설보호 아동이 총 12,193명임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보다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가 되는 ‘부모’가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고, ‘국가’는 ‘부모의 양육책임 수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최선의 이익 실현이 어려운 아동 즉 보호 대상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20조 1항). 협약의 원칙과 이의 실천내용으로서의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대안적 아동보호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UN General Assembly, 2010)이다. 이 지침은 원가정 보호를 대신하는 공적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호유형별로 그 보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을 어떤 보호에 배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 제15조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법 제4조 3항)’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할 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제15조 1항의 3호-6 호의 가정 외 보호의 조치는 가정위탁이나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지만, 이러한 보호유형 중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법 제15조 1항 및 2항의 보호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가정위탁 보호 등의 신청(령 제14조)’, ‘입소 의뢰 등(령 제15조)’, ‘입원 등의 의뢰(령 제17조)’ 등 보호유형별 신청 주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도 해당 시행령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 제4조 3항의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국가책임의 원칙은 법 조항과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6)

2018년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경우, 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 양육 조치가 ‘우선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 치료기관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7)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대상자로 명시하는 반면, 그 외 아동의 경우 비 연고자에 의한 보호의 우선순위는 모호하지만, 시설보호는 ‘연고자 가정 대리 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해 실시’한다고 함으로써 시설보호를 최후의 선택지로 안내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책무를 고려하면 사업안내 상의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를 아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지만, 그 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시설보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 매뉴얼’(p. 14)은 사업 안내를 보다 구체화하여,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 그룹 홈→ 아동 양육시설’ 등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보호를 우선시하고, 시설보호도 소규모 그룹 홈과 양육시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매뉴얼의 보호조치 업무의 초점은 원가정에서의 분리에 앞서 최대한 원가정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며,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보호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업무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⁸⁾

6) 보호 대상 아동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20.08, 장영인

7)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5P ~ 6P ‘아동보호 서비스 기본 원칙’

8) 보호 대상 아동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20.08, 장영인

(1) 해외 사례 - 영국

영국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발달역사가 길고, 1989년 아동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동법과 하위법인 시행령(The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England) Regulations 2010) 및 구체적 실행 지침(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을 분석한 장영인(2018)에 의하면, 영국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보호는 보호조치 전후의 전 과정에서 아동 중심의 관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일관된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공적 보호의 특징은 첫째, 보호 대상 아동 발생의 감소와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원가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한다(아동법 제3부 제16조의B~제19조의 총 4개 조문에 규정). 아동에 대한 가정 외 공적보호도 가정 보호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아동법 제17조(보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은 “모든 지자체의 일반 의무는 (a)보호 대상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촉진하며, (b)이러한 의무의 연장선에서 아동에 적합한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촉진하는 것”(제17조 제1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법 세부 지침2(DfE, 2015)도 아동법의 핵심 원칙은 ‘가족생활에의 강제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가족 내에서 그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잘 양육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지자체의 기능은 보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자체의 의무는 이들을 그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1.5). 이는 보호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DfE, 2015: 2.29)에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 대한 지원, 부모 돌봄의 역량을 벗어나서 학대나 방임의 위험이 큰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 계획에 따라 가정 내에서 돌보는 제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원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은 약 40만 명, 원가정 보호 아동 중 보호 계획 하에 집 중지원을 받는 아동은 약 5만여 명이다. 특히 가정 외 보호의 유형 중 시설보다는 가정 형태의 보호를 우선하여, 가정위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잉글랜드의 공적보호 아동은 78,150명으로서 그중 56,268명(72%)의 위탁 보호 (13%)는 친척이나 지인 위탁, 58%는 일반위탁)를 받고 있다. 아동 홈과 같은 소위 시설보호는 12%, 13%는 입양, 나머지는 부모와 거주 또는 독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fE, 2019). 이는 보호 대상 아동의 다수가 시설 보호 되는 우리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⁹⁾. 영국의 공적보호가 주는 시사점은 보호 영역을 원가정 보호와 가정 외 보호로 구분하여 전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 외 보호에서도 그 보호 내용과 보호 방법에 있어서 보호 당사자인 아동이 자신의 복리를 스스로 추구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점이다.

9) 보호 대상 아동 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20.08, 장영인

Ⅲ. 결론

1.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없다.

보호 대상 아동에 관련된 자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난 10년간 아동의 보호 대상 아동 조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가정환경 또는 가정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는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보호 대상 아동들은 가정 외 보호, 즉 시설입소를 하고 있으며 국가 책임의 원칙은 법 조항과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동서비스 업무매뉴얼> 역시 구체적인 업무 지침 역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이 최근 2020년 4월 7일까지 개정되었지만 결국 보호 대상 아동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시설입소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기한 ‘가정환경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인 입양가정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국가 행동지침 체계화의 부재는 시설보호를 선택하는 현실적 논리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정위탁 희망자가 적고, 시설자원이 많고, 관련 공무원이 적다는 현실 상황을 근거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체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 아동을 논할 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예산안 증액은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보호할 국가가 그 책임을 시설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끔 하며 미루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개인이 의무를 못 하면 개인이 책임지면 되지만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못 하게 되면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 국가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재정과 법적 이행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2. 보육시설 입소부터 퇴소, 이후

짧은 시간 20년, 하지만 남은 삶에 미치는 영향들

아동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로 알 수 있듯이 양육자와 아동 간의 관계 및 양육자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사회성발달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발달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남아는 아버지로부터 객관적 태도, 정의, 관용, 이성적 행동 등을 배우는데, 이러한 것은 사회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므로 아버지가 부재하면 아동은 이러한 덕목을 배우기 어렵고, 남성의 성역 할 행동을 배울 기회도 그만큼 차단된다. 또 남아는 어머니로부터 여성상을 배우게 되는데, 어머니가 부재하면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아는 아버지를 통하여 남성상을 이해하고, 이성과의 인간관계를 수립하는 기초기술을 배우는데, 만약 아버지가 부재하면 여아는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를 수립할 기술을 제대로 배우기 어렵고, 어머니가 부재하면 여성의 성 역할 행동을 제대로 배우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무 부모의 경우 남아나 여아 모두의

사회성발달 및 기타 특성의 발달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¹⁰⁾. 하지만 보육원이라는 곳은 가정환경과는 다르게 1:1 방식이 아닌 1: 다수의 방식으로 아동들이 양육되며, 보육원 내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배울 기회가 없을뿐더러 보육교사의 경우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아동으로서는 애착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은 보육원 퇴소 후 가정 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들과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며 퇴소자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호 종료 아동을 논의할 때 경제적 자립(주거, 학비, 생활비)을 빼놓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 역시 만만치 않다. 보육원 퇴소자의 경우 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불안정한 정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육원 퇴소 당사자로서 주변의 여러 사례로 목격하고 있다. ‘한국고아사랑협회’에서의 활동으로 다양한 사례자를 겪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당연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꽤 많다.

다양한 사례 중 현재 20대 청년들이 자주 겪고 사례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례 1. “대학생 A의 남자친구는 A를 때리긴 하지만 A는 남자친구가 A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행복하다. 상담자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만류했다. 폭력을 쓰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좋은 남자도 아니라고 했다. A는 상담자에게 물었다.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사례 2. 직장인 B는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다. 여자친구는 무직이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서 음주 후 외박을 즐긴다. 그녀의 모든 생활비를 포함한 동거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는 B의 월급으로 해결한다. 얼마 전 B는 여자친구가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과 ‘원나잇’을 즐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헤어질까 고민했지만 계속 동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담자는 헤어지는 것을 권유했다. B의 대답은 “그래도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고마운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례 3. 명문대생 C는 토론 수업이 너무 싫어서 심각하게 휴학을 고려 중이다. 토론 수업이 싫은 이유는 자신의 논리가 틀렸거나 부족한 경우 본인이 ‘보육원에서 자란 것이 들킬 것 같다’는 이유이다.]

[사례 4. 직장인 D는 결혼을 염두에 둔 남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졌다. 연애 초반기에는 자신이 보육원 퇴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기에 밝히는 것이 맞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D의 모든 걸 이해 할 수 있는 자상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는 D에게 이별을 고했다.]

[사례 5. 결혼한 E는 시댁에서는 보육원 퇴소자라는 것을 모른다. 엄마가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육원에 입소했던 E는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소위 흠이 잡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편모라는 사실 만으로도 시댁에서는 가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보육원에 살았다는 사실은 절대 하지 않을 예정이다.]

10) 교육의 이해, 오만록, 형설출판사, 2000년

[사례 6. 직장인 F는 퇴소 후 자립정착금도 아낄 목적으로 숙소가 제공되는 직장에 취업했다. 그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이자 형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 형과 많은 것을 공유했다. 그러다가 형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3개월 동안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했다. F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이기에 서슴없이 형에게 자립정착금으로 나온 돈을 빌려주었다. 1년이 지났지만, 형은 아직 돈을 갚지 못했다. F는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직장생활로 월급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채근하지 않았다. 형에게도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형은 F에게 말도 없이 회사를 퇴사 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다.]

“지켜진 아동의 개인정보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회 국회 개인정보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II. 사례발표

사례발표 1. 베이비박스에서 바라본 보호아동의 개인정보 방안

☞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담당목사 이대동

사례발표 2. 가정의 축복, 입양

☞ 전국입양가족연대 박사 배지연

사례발표 3. 한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박리현

사례발표 4. 미혼부 가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대표 김지환

사례발표 5.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제안서

☞ 선한울타리 설립자 대표 최상규

사례발표 6. 내가 경험한 국외입양

☞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회장 정애리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사례발표 1

베이비박스에서 바라본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방안

-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담당목사 이대동 -



베이비박스에서 바라본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방안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담당목사 이대동

위기 영아를 보호하고 미혼부모들의 피난처로 세상에 알려진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의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 ① 보호영아(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사업
- ② 위기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상담 및 무료 출산 의료지원 사업
- ③ 양육지원이 필요하거나 요청한 가정들을 위한 물품지원(개별 가정 맞춤형 “베이비케어키트”)사업과 최소한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형 베이비박스이자, 미혼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베이비박스이다.

연간 200여 명에 달하는 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약 1000건에 달하는 위기상담을 진행하며, 매일 1~2회 정기적으로 100여 가정에 양육 물품과 필요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한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의 모든 활동은 보호아동의 생명보호와 위기 영아의 원가족 복귀 그리고 가정 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과 대표번호 1670-5297(아이구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임신과 미혼부모, 그리고 위기가정을 상담하고 있다. 1대1 면담을 통한 상담 과정 중 보호아동 발생을 최소화하며, 영아가 친생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원가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서 말하는 “원가정보호 최우선”이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친부모를 만나 그들을 상담하고 아기를 다시 데려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차선으로는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한 입장을 연계하는 일이다.

보호아동 발생하면 영아일시보호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보호 요청을 한 부모를 상담하여 원가정 내 보호를 설득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입양기관과 연계하여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보호를 실천한다.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양 권고(출생신고)를 모두 수행하는 베이비박스의 관점에서 보호아동들의 가정보호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주사랑공동체는 모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지지한다. 모든 보호아동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가정 내 보호가 우선이고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가 차선이라 할 수 있으나 먼저 확인되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동보호’가 아동이 지니는 발달적 특성이 고려된 보호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가정이 입양가정에 우선한다고 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원만하게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한다.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까지 각 발달 단계별 과제를 수행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즉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아무개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말은 ‘한 아동이 바람직한 관계와 환경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발달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아동의 전인격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자의 적극적인 돌봄과 지지, 교육과 후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입양신청 가정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면밀히 심사하는 이유도 입양가정이 입양아의 발달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고자 함일 것이다.¹¹⁾

입양가정의 자격을 심사하는 목적과 같은 이유로 보호아동의 원가정 내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이 성립하려면 원가정 또한 아동 발달을 수행할 충분한 여건을 갖춘 가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보호’라는 표현의 ‘가정(家庭)’은 그것이 원가정이든 입양 가정이든 아동발달을 원만하게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가정’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만약, 어떤 보호아동의 원가정이 아동 발달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입양가정 내 보호가 그 아동에게 있어 최선일 수 있다.

1. 베이비박스를 통해 본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 원가정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할 실질적인 정책의 미비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녀가 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고(제44조 제1항),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만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제11조 제1항 1호). 입양특례법은 보호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밝혔고 오히려 법안 발효 이후 입양을 통해 가정 내 보호되는 아동수가

11) ‘발달단계이론’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b4046b>. 인간 발달 단계는 불연속적으로 각 개인의 삶에 나타난다. 개인차는 있으나 어느 누구에서나 공동적으로 발견되는 계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발달이론 중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 에릭슨의 인성발달단계이론 등이 있다.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¹²⁾ 심각한 문제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질적 문제들과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보고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재개정이나 대안 입법 등의 조치가 요원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입양을 위한 출생신고의 허가제’와 같이 법제도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재원 조달의 필요가 없지만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보호아동의 원가족 내 보호라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재정조달과 관리 인력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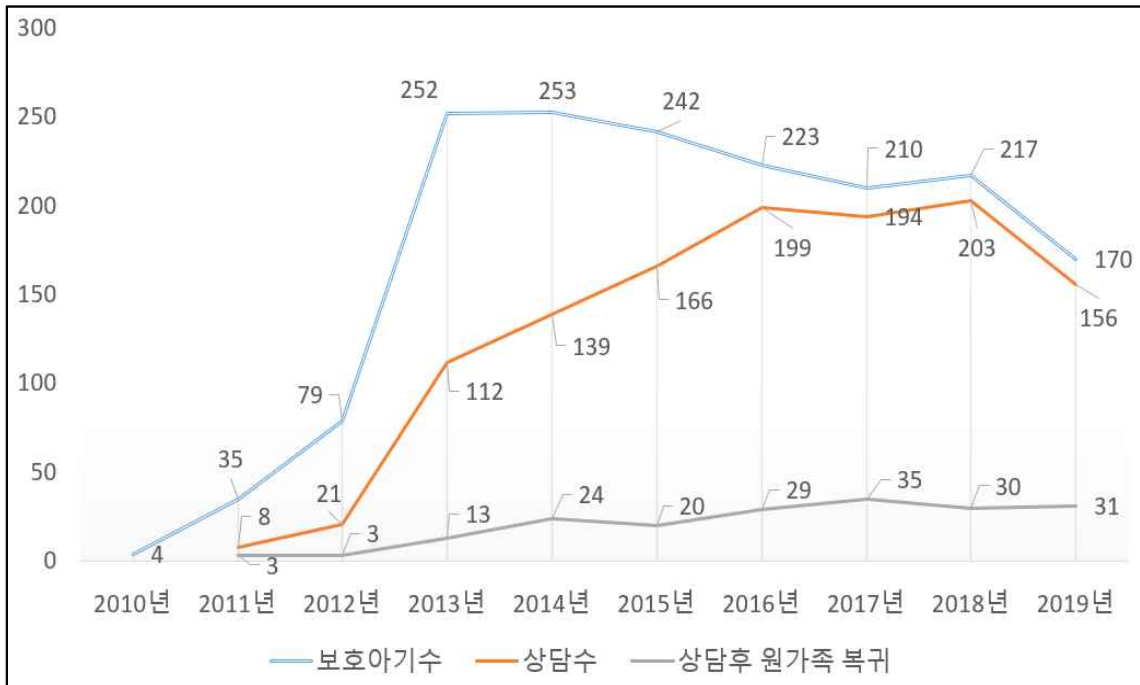
보호아동 발생 위기에 놓인 가구 수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위한 장기간의 조사, 막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보호아동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상당수의 인력과 이들을 통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특례법은 이 점을 간과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숫자는 2013년 252명까지 폭증했다가 2015년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상담 후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의 숫자(표<1> 하단에 표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30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총 상담건수 156건 중 31명의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 19.8%의 복귀율을 기록했다. 원가정 복귀를 종용함에 있어 “베이비 케어 키트”(기저귀, 분유 등, 약 35만원 상당의 물품을 36개월간 매달 1회 이상 배송) 지원을 약속하고 24시간 열려있는 상담채널 이용을 안내하고 긴급통화를 통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생활비지원, 취업연계, 의료비, 집세, 자격증취득, 개인회생 등 자립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상담의 요체는 긴급한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경우와 사례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12) 국회입법조사처(2017),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제1회 국회입양컨퍼런스 자료집 42~43쪽 재인용 -국내입양법의 문제와 대안입법의 지향점(김미애).



<표 1. 베이비박스 보호수 및 상담을 통한 원가족 복귀수>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친생부모 중 99%(2020년 6월 기준)를 상담하고 지원 약속 등을 통해 원가정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권고한다. 위기 가정 후원은 베이비박스를 방문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전화(대표번호 1670-5297) 및 채팅 상담을 통해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미혼모 가정을 포함,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미자립 가정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상담과 양육 후원 사업이 한국의 베이비박스가 전 세계적으로 18개국 이상 200여 곳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나라의 베이비박스과 다른 차별요소이다.

아래 표<2>는 주사랑공동체에서 2015년 이후로 집계한 가정 지원 사업을 나타낸다. 베이비케어키트의 지원 가정의 수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실제 2010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5년 기록부터 객관적 지원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입양특례법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실효를 거두었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보호아동의 숫자도 급락하였을 것이고 상담을 통한 물품 지원의 발생 건수도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상담을 통해 원가족으로 복귀한 31명의 아동은 적절한 복지혜택이 주어졌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 전체인 170명의 18.2%에 해당한다.

구분	*위기상담 (명)	일시보호 아기수 (명)	베 이 비 케어키트 지 원 수 (건)	중간키트 지 원 (건)	출산지원 (명)	의료지원 (명)	생활비 지 원 (건)	주거지원 (명)
2015년	-	-	462	-	-	-	-	-
2016년	1,289	77	661	-	1	5	-	19
2017년	1,148	65	762	96	3	4	108	22
2018년	1,463	49	727	216	6	15	88	12
2019년	1,438	39	1,004	352	8	6	55	7
합계	5,338	230	3,616	664	18	30	251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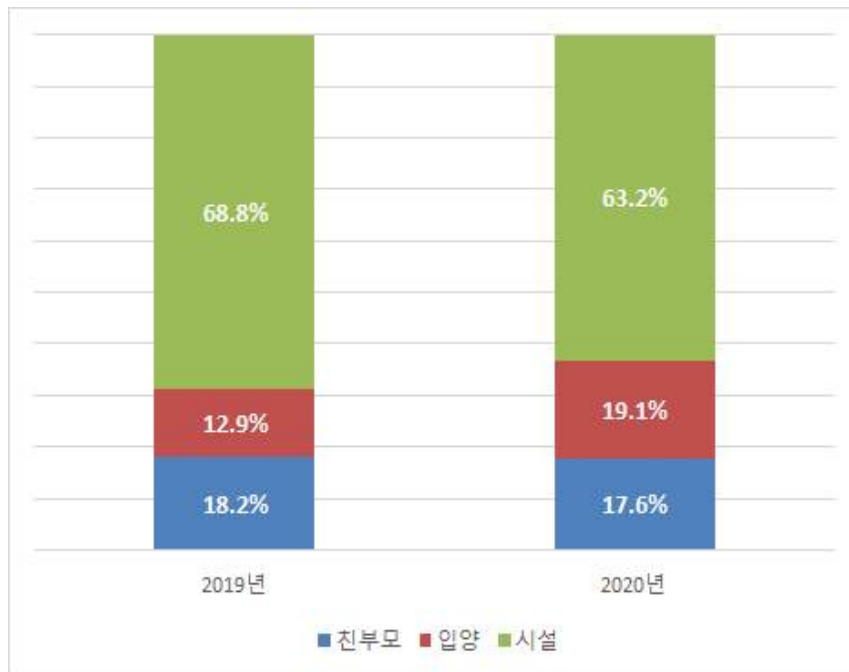
<표 2.온·오프라인 위기상담 및 친생부모가 키우도록 설득한 가정 복지지원 건 수(명)>

2) 출생신고 허가제의 문제 : 입양 가정 내 보호를 방해

표<3>에서 보듯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들 중 60%이상이 시설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베이비박스에서 입양기관으로 이동한 아동은 19.1%, 원가정 보호는 17.6%에 그치고 있다. 출생신고 허가제가 입양된 아동의 친부모 알권리를 보장할 뿐 보호아동의 원가정 내 보호 목적에 반하여 시설보호 아동의 증가라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보호된 아동의 친부모와 상담해보면, 보호아동의 원가정 내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경제적 여건 개선 및 지원을 비롯해서 비교적 다양하지만, 법, 행정, 복지 지원으로도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입양가정 내 보호를 권할 때면 거의 대부분 출생신고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출생신고가 친생부모 알권리의 유일한 수단은 아닌데 이로 인한 피해는 작지 않으므로 보호아동의 친생부모의 정보를 확보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표 3.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진로>

3) 출생신고: 시설입소를 막는 장벽이자 시설아동의 입양진행의 방해물

어떤 개인이 보호아동을 시설에 맡기고자 한다면 입양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위기 부모는 아동과 함께 결국 베이비박스를 찾게 된다. 상담을 통해 입양이나 원가정 보호를 친생부모가 결심할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아동의 조부모를 설득하는 등 노력하는 동안 아동은 베이비박스에서 보호될 수밖에 없다. 출생신고 전이기 때문에 시설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배경적으로 출생신고가 곤란하나 결심 여하에 따라 출생신고가 가능한 아동과 원천적으로 출생신고가 거의 불가능한 아동이 있다. 시설의 입장에서 시설 내 보호되는 아동의 입양 진행을 꺼리고 시설 내에서의 지속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로 원가정 회복이 우선이란 원칙과 보호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말한다.

부모가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입양 보낼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출생신고 여부 때문에 반만 맞는 말이 된다. 보호아동을 원가정에서 키우고 싶으나 주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출생신고가 어렵지만 가능한 경우와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배경을 지닌 아동을 시설에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가정 내 보호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로 보내진 보호아동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원가정 복귀의 가능성 때문에 입양 진행이 원천 봉쇄되어 가정 내 보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4) 가정위탁: 입양의 대안이 아닌 일시 보호를 위한 수단

베이비박스에서 진행하는 상담 중 상당 기간 동안의 한시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경우, 위탁 가정으로의 연결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역시 출생신고가 전제되어 있는 점은 같다).

가정위탁의 경우도 시설 내 보호와 마찬가지로 발달적 특성을 지닌 아동에게 가정 안에서의 보호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가정의 순기능들을 가정위탁을 통해 전부 발현할 수 없다. 이는 가정위탁이 가정 내 보호의 한 종류가 아닌 시설 내 보호의 한 형태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은 가정 내에서 보호될 때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전감을 누릴 수 없음은 물론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누릴 수 없다. 이 연대감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다만 곁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준비와 연결된다.

시설보호 아동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서로서로 향유하게 되는 전(全)생애에 걸친 물질적, 정서적 후원과 행복하고 안전한 지지를 누릴 수 없다. 가정위탁도 시설보호아동과 마찬가지로 만 19세가 되면 위탁이 종료된다. 만 19세라는 연령이 참정권이나 재산권 행사 같은 법적인 성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지 인간발달의 완료를 의미하진 않는다.

5) 장애가 있는 아동 입양 활성화 방안

보호아동이 입양 대기 중 검사를 통해 장애가 발견될 경우 입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 판정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염색체 이상 등의 우려가 있어서 지속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애가 발견될 우려만으로 입양 진행이 거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양에 대한 선진화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모든 아동의 안전한 가정보호를 위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의 제언

1) 보호아동의 원가정 내 보호를 실현할 지원방안 마련

주사랑공동체는 모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지지한다. 원가정 내 보호를 우선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아동의 발달적 측면이 고려된 실질적인 후속 대책과 방안이 긴급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발달적 특성이 고려된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입양특례법을 대체할 다른 법령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지원할 양육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2)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허가제를 대체할 비밀출산법 제정

출생신고를 조건으로 시설보호나 입양 진행이 되는 현행법은 아동의 안전한 가정 내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보호가정의 산모와 태아가 산전 진료로부터 출산, 산후 아동의 진료(원가정, 입양, 시설보호) 탐색에 이르기까지 의료적 보호를 포함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밀출산법 제정을 요청한다.

현 정부에서는 익명출산제 카드를 꺼냈으나, 이는 오히려 원가족 복귀를 저해하는 또 다른 입양특례법일 수 있다.

비밀출산법은 다시 말해 “임산부지원 확대와 비밀출산법”이다. 임산부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임산부지원에 대한 확대를 지금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미혼모를 먼저 지원하고 책임이 있는 도망간 친부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률이라 하겠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경우, 비밀출산법은 출산 전 과정을 개인의 신상 노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출생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기록이 남지 않고 행정기관을 통한 단독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곧바로 입양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프랑스의 CNAOP(Conseil National D'accès Aux Origines Personnelles: 양자의 출산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평의회)와 같이 별도의 기관 또는 가정법원 내에 친생 부모의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 신설을 제안한다. 출산이나 입양, 시설보호 등을 요청할 때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보장되어야 한다. 입양의 경우, 입양아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비밀유지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조건부 비밀해제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된다.

3) 시설입소 대상선별과 출생신고를 대체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설보호의 조건인 출생신고를 대체할 의학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DNA 샘플 채취를 통한 정보 확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설 내 보호 아동 중에서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보호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 보호 대상자인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입양 진행 대상자인지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입양 숙려 기간을 두어 보호아동의 원가정 내 보호를 유도하듯, 시설 내 보호 기간 제한을 설정하든지 입양을 위한 절차를 입양기관을 통할 때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4) 보호아동 일시 보호소로서 가정위탁의 가능성

가정위탁은 가정 내 보호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가정 내 보호의 한 종류인 입양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보호아동이 원가정 내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보호를 위해 선택될 수 있다.

현재로서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에겐 원가정 복귀, 입양, 시설, 이상의 세 가지 진로가 있지만, 여기에 한시적 보호를 위해 가정위탁으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동의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 보호의 형태 중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우려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방안

보호아동의 입양절차 진행 시, 미국의 예와 같이 입양 신청 양식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입양 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 성장 중 발견된 장애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해 파양되거나 입양절차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입양한 아동의 장애 정도 따라 생계비·교육비 지원, 세금 경감, 의료보험 적용 확대,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들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사례발표 2

가정의 축복, 입양

- 전국입양가족연대 박사 배지연 -



가정의 축복, 입양

전국입양가족연대 박사 배지연

1. 서론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체가 개인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 개인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소규모 공동체들이 모여서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라는 조직으로까지 확장 된다. 인간은 홀로 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면서 학습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Homo socies : 호모 소키에스)이기에 소속된 공동체의 성격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개인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공동체가 어떤 형태를 지니는지,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한 개인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금도를 넘어서 공동체 그 자체가 목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원을 착취하며,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공동체 자체가 개인보다 우위에 있었던 때인 중세의 봉건왕조라든가, 20세기 초 유럽의 전체주의 및 공산주의를 보면 특정 인물(왕, 또는 소수의 권력자) 또는 특정 집단 (파시스트당, 공산당, 나치당 등)이나 국가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개인의 삶이 어디까지 비참해 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갓 태어난 인간이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국가처럼 법과 제도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이다. 때로는 규칙과 규율로 엄하게 양육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싸매어 주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용서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다. 부모의 적절한 훈육을 통해 자녀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부모의 용서를 통해 자녀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정은 계약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며 개인이 이익을 얻기 위한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닌, 부모와 자녀간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필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이와 비슷하게 가정을 이루는 필수 요소는 부모와 자녀 같은 인적 구성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가정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가정의 구성원이 살아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의/식/주를 비롯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가정을 이

루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사상도 철학도 아니요 이데올로기도 아니요, 혈연도 아닌 바로 ‘사랑’이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됨을 통해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자녀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인간의 논리와 학문으로 설명하기 힘든 가정의 신비를 잘 표현한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 싶다.

앞서 예를 들은 바와 같이 국가를 가정보다 우선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로 끝이 났으며, 이데올로기와 사상/철학을 앞세우기 위해 가정을 해석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혈연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많은 가정들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입양’가정들이 그 당사자 들이다.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맺어진 입양 가정은 비록 혈연이라는 물리적 관계가 없을지라도 부모와 자녀라는 인적구성원을 갖추고,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춘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의 보호를 받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었다. 여기에 더해서 자녀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리잡고 있고,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애뜻한 애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입양가족들은 삶에서 증명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필자는 이러한 입양가족들의 모습 속에 마치 기독교 사상을 그대로 복사하여 체현하는 듯한 기시감을 느낀다. 기독교에서는 죄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어 속죄하기 위하여 전능한 신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인간을 죄의 자녀로부터 신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입양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양 당사자인 입양가정의 현실을 무시한 채 몇몇 소수의 집단들이 ‘입양’이라는 제도를 적대시하고 폄훼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본 발제에서는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동이 생물학적 부모와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경우 국가나 다른 기타 공동체에서 양육되는 것보다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인 부모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특별히 현 정부에서 입양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헤이그 협약’을 살펴보면 해당 협약이 의미하는 ‘아동 최우선 원칙’이 어떤 의미인가를 짚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헤이그 협약에 대한 이해

현 정부 및 일부 여당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입양특례법 개정의 중요한 명분으로 대한민국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17회기에서 채택된 입양협약인 소위 ‘헤이그 협약’(더 정확하게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비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헤이그 협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헤이그 협약은 1965년 입양협약이 채택된 이후 피임이나 임신중절 등으로 출생률이 저하된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아동이 입양되면서 국제입양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제도나 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아동의 불안정한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993년 제정되었다.

해당 협약의 목적은 표 1의 헤이그 협약 머리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은 가정에서 조화롭게 자라야하며, 우선적으로 출신가정(혹은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신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입양을 통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해야 하되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매매, 탈취와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헤이그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동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돌봄과 사랑을 경험하며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가정이 출신가정 즉 ‘원가정’이 되었던 출신국내의 ‘입양가정’이 되었던, 혹은 해외의 ‘입양가정’이 되었던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헤이그 협약 본문에서는 여러 차례 입양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적인 기관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헤이그 협약 어느 곳에서도 아동을 공적인 기관에서 (시설)양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이념과 방향성을 고수하는 소수의 집단에 의하여 헤이그 협약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채 입양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입양의 모든 실무 과정을 국가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라든가 ‘출신가정에서의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념에 경도되어 국가나 사회가 출신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인 ‘출신가정(혹은 원가정) 신화’에 몰입된 정책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실상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헤이그 협약의 취지인 공정한 입양절차 관리를 훼손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입양과정의 공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실무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를 관리 감독할 때에만 가능하며, 공적 기관이 이러한 제 3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적기관이 입양과정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게 될 경우 제 3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입양 절차의 공정성을 관리 감독할 주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헤이그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이룰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헤이그 협약 머리말

English	국문 번역
<p>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p> <p>Recalling that each State should 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child to remain in 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f origin,</p> <p>Recognizing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offer the advantage of a permanent family to a child for whom a suitable family cannot be found in his or her State of origin,</p> <p>Convinced of the necessity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are mad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ith respect for his or her fundamental rights, and to prevent the abduction,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p>	<p>이 협약의 서명국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애정 있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한다.</p> <p>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한다.</p> <p>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p> <p>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다.</p>

[자료 출처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 석광현, 이병화 -]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은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1976년 입양법이 제정된 이후 입양 가정을 보호하고 입양에 우호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입양관련 법률체계를 뒤흔들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입양관련 법률은 아래 표 2와 같이 1976년 '입양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모두 16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중 10차례의 개정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타법률의 개정과 따른 기관의 명칭 변경 또는 법 조항 정비를 위한 단순한 개정과 속하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반면, 1996년, 1999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6년, 2017년 개정은 입양에 대한 사회의 시각, 당 시대의 여론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한 것이기에 입양가족 및 입양당사자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정비로 인한 개정 과정을 제외한 1976년 법률 제정 및 6차례의 개정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 2의 법률 제 개정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6년 최초로 제정된 법률은 ‘입양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며,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제정 이유로 밝히면서 국내외 입양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의 입양에 대하여 사회적 시선이나 국가의 입장이 긍정적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법률에 녹아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이후 1995년 개정된 입양 법률은 그 명칭을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변경하면서 입양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입양과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전부 개정안이었다. 해당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라고 명시함을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고 종전의 행정중심, 절차 중심의 입양제도를 벗어나 아동중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부모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개정된 일부 개정안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양업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입양에 따른 인권유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입양 당사자들이 입양과정에서 절차적 편의성을 경험함과 더불어, 입양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아동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으로써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공개 입양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원 혜택의 근거를 마련한 제도로서 입양가족들 입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제도 개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 입양의 날’ 제정을 통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 영역이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제도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입양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입양촉진을 위하여 입양법률이 전부 개정된 이후 2005년 일부 개정안까지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입양이라는 문화 자체를 소중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입양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입양 가정과 입양 부모를 보호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 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양에 호의적이던 사회 분위기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2011년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2011년 최영희 전(前) 의원이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명칭을 기존의 ‘입양 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이유는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로 명시하면서 입양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입양 가정과 입양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철학이 강하게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 혹은 공공 영역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과정은 생략된 채 개인은 악을 저지 를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국가 또는 공권력이 이를 감시·감독하여야 한다는 위험한 철학을 대한민국 법 제도에 그대로 녹여내는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후 2015년, 2017년 2차례에 걸쳐서 일부 개정된 내용 역시 개인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여기면서 국가의 공권력이 이를 개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짙게 깔려 있음을 표 3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대한민국 입양 법률의 변천과정

	법률명	제개정일자	목적
1	입양특례법	1976.12.31., 제정	이 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양특례법	1990.12.31., 타법개정	상동
3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1995.1.5., 전부개정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1997.12.13., 타법개정	상동
5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1997.12.13., 타법개정	상동
6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1999.1.21., 일부개정	상동
7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1999. 9. 7., 타법개정	상동
8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2000. 1. 12., 타법개정	상동
9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2004. 3. 5., 일부개정	상동
10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2005. 3. 31., 일부개정	상동
11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2007. 5. 17., 타법개정	상동
12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2008. 2. 29., 타법개정	상동
13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특례법	2010. 1. 18., 타법개정	상동
14	입양특례법	2011. 8. 4., 전부개정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입양특례법	2015. 5. 18., 일부개정	상동
16	입양특례법	2017. 9. 19., 일부개정	상동
17	입양특례법	2019.1.15. 타법개정	상동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표 3. 대한민국 입양 법률의 제개정 이유

	법률명	제개정일자	제개정 이유
1	입양특례법	1976.12.31., 제정	<u>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u> 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이 법에 흡수·규정함으로써 당해 <u>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u> 하려는 것임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995.1.5., 전부개정	<u>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u> 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6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999.1.21., 일부개정	국내외 입양기관간에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u>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양업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u> 하고, <u>불법입양에 따른 인권유린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u>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004. 3. 5., 일부개정	아동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으므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u>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u> 하려는 것임.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005. 3. 31., 일부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u>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u> 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u>5월 11일을 입양의 날</u> 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	입양특례법	2011. 8. 4., 전부개정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u>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u> 하고, <u>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u> 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u>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u>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u>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u> 하고, <u>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u> 이 지나고 나서 <u>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u> 하는 한편, <u>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u> 하고, <u>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u>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15	입양특례법	2015. 5. 18., 일부개정	현행법은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u>국외입양 사후관리</u> 는 입양기관이 국외 입양기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하여 국내입양과 상이하게 이루어지므로, <u>대통령령에서 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u> 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6	입양특례법	2017. 9. 19., 일부개정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상기한 바와 같이 부모의 보살핌 아래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마련된 헤이그 협약을 훼손 및 오독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왜곡된 정책적 방향을 기반으로 마련된 2011년 최영희 前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2011년 이후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생후 6개월에서 1년간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양 절차가 길어져 입양이 늦어지게 되는, 그리하여 이른바 연장아 입양이 급증하게 되고 입양가정 내에서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년도별 국내입양아동의 연령 변화 추이 (2009~2018)

그림 1. 년도별 입양아동의 연령 변화 추이

[자료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이뿐만 아니라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아동의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입양을 위해서는 미혼모가 아동출생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도록 하여 그림 2와 같이 영아유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베 이비 박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유기 아동 비율은 증가 (단위: 명)

※출생아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



자료: 전국입양가족연대(통계청 자료 분석)

그림 2. 2011년 입양특례법 이후 출생아 1만명당 유기아동 수

[자료출처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64>]

이 외에도 그림 3과 같이 국내 입양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2011년 입양특례법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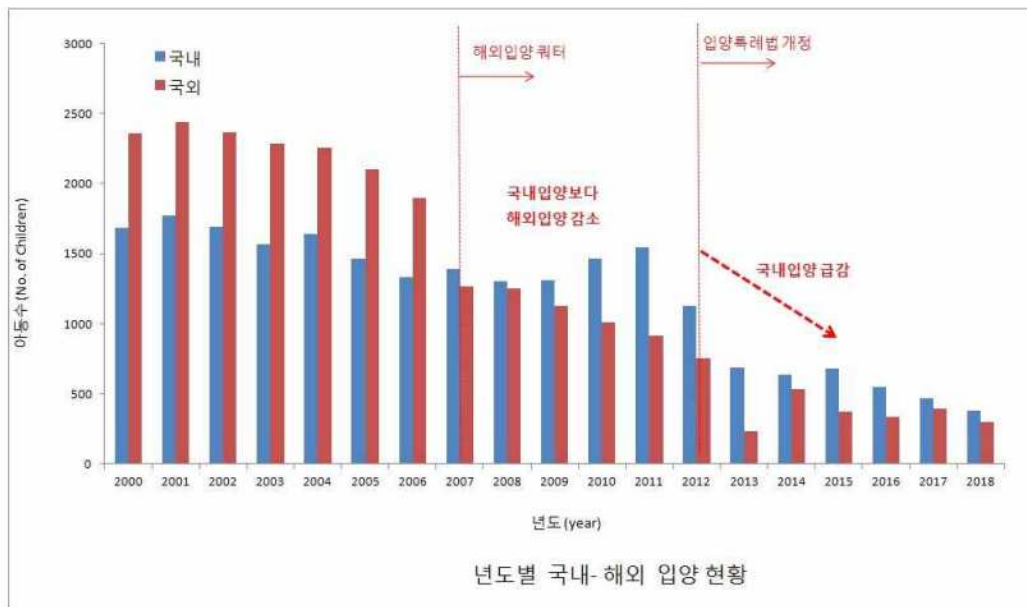


그림 3. 년도별 국내외 해외 입양 아동 수

[자료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집단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대표로 하여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2018년도에 발의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끊임없이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알권리’를 아동의 가장 고귀한 권리로 구성하면서, 실제로 위기 아동의 입장에서는 알권리 보다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으며 가정

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더 큰 권리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나친 '출신가정 신화'에 매몰되어 아동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눈 감아 버리는 비정한 모습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 아동의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하는 이유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유아기 아동의 가정 양육 필요성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고 자랄 때 가장 건강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의 경우 일반아동보다 위축, 불안, 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력 및 주의집중력, 비행 등 다수의 항목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자라난 아동들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협동기술, 자기주장 기술 및 자아통제기술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인 공감 능력이 낮고, 나아가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내면에 적체되어 있던 문제들이 외부적으로 발현되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출처]

- 노혜련, 장정순, 백은형, 시설아동의 심리학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1997)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2001) 한국아동복지학, 39(2), 135-149.
- 성미영,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2006)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1), 17-29.
- 이순형, 이혜승, 초 · 중 · 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2002), 아동학회지, 23(4), 119-136.

(2) 유년기/청소년기 아동의 가정 양육 필요성

유아기를 지나 유년기/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동들이 시설에서 양육될 경우 비록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반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아동에 비해 가출경험(11배), 장기결석, 흡연경험(3배), 자살충동의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아 시설아동들의 사회적 부적응이 관찰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지원보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자라난 아동들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제한 및 유기된 경험에 의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부정적인 성

격 형성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높은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는 소극적, 비협조적,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며, 잘 해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이 강하고 유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울러 성인이 되어서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적응의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록 유아기 때 시설에 잘 적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설양육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신소희,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고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1984)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혜련, 장정순,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아동복지학.
- Frank, D.A. et. Al. L.,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orphanages: One view from pediatrics and child psychiatry. (1995) Pediatrics, 47(4), 569-578.
- Pringle, M.L., & Bossio, V. Early prolonged separations and emotional adjustment, (1967)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 37-48.
- Tizard, B., et. Al. ., The effect of early institutional rearing on the development of eight-year-old children, (1977),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99-118
- 이순형, 이혜승, 초 · 중 · 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2002), 아동학회지, 23(4), 119-136.
- 주정일, 이소희, (1989) 아동복지학, 서울: 양서원

(3) 입양아동의 행동 특성

2015년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종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란 입양아동의 경우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포함한 입양아동의 자아발달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고, 인지발달 전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사회성발달 영역에서는 입양아동들의 교우관계문제가 또래의 비입양 아동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또래 애착은 높은 수준이고,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사회성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입양아동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경우 비교집단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입양가정의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 수용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행복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입양아동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양아동 스스로 본인이 입양아동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입양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은 수준이며, 학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학교폭력경험은 일반아동에 비해 적은 편이며, 사회적 지지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입양아동의 종단연구를 통해 입양아동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출처 : 2015년도 (재) 중앙입양원 연구용역‘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의 최종보고서]

4) 해외 사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시설에 비해서 위기아동의 가정양육이 필요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기아동의 가정양육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 위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가정위탁을 가정양육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임시 시설보호소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가정위탁에 대한 방향성의 도움을 얻고자 해외사례, 특별히 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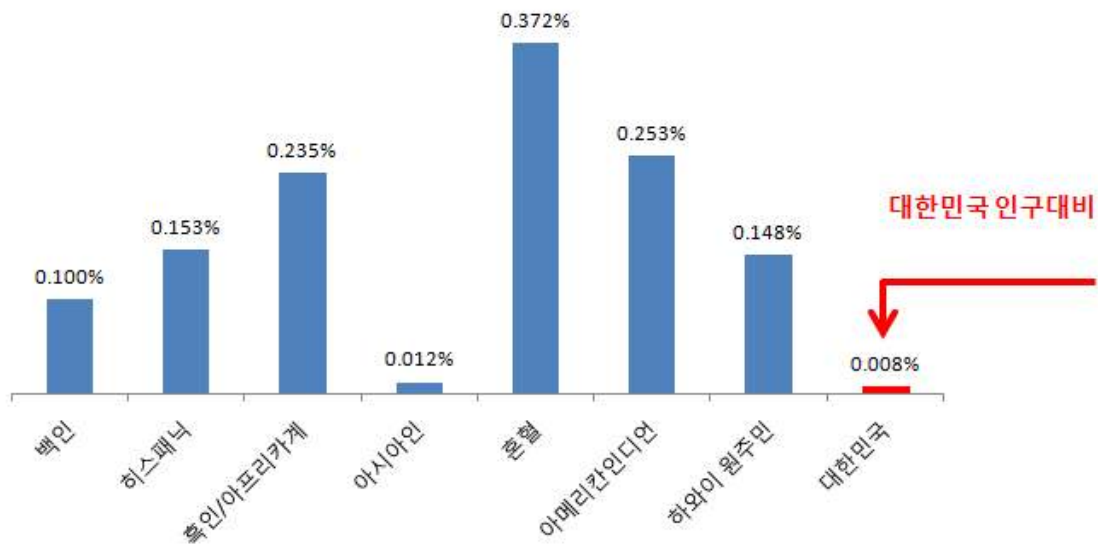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위기아동보호를 위하여 시설보호보다는 포스터 케어 (Foster Care)라고 불리는 일종의 가정위탁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기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표 4. 2017년 미국의 포스터 케어 현황 (2016.10.1.~2017. 9.30)

항목	아동수 (명)
9월 30일 기준 포스터 케어 중인 아동 수	442,995
해당 연도 포스터 케어 시작 아동 수	269,690
해당 연도 포스터 케어 종료 아동 수	247,631
해당 연도 포스터 케어 서비스를 받은 아동수	690,548
9월 30일 기준 입양 대기 아동 수	123,437

[자료출처 :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매년 대략 27만명 정도의 포스터 케어 대상 아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위기아동의 숫자가 대략 4천 백여명인 것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우 위기아동 발생 비율은 대한민국에 비하여 11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엄격하다든가, 혹은 가정 또는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이 더 엄격하게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2017년 미국내 인종별 인구대비 foster care 발생 아동 비율

그림 4. 2017년 미국 내 인종별 인구대비 위기아동 발생 비율

[자료출처 :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인종 간의 비교를 통해 보면 아시아인들의 경우 위기아동 발생 비율이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아시아인의 인종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가정위탁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들을 인용하여 가정위탁을 위기아동 보호시스템의 중심축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가정위탁 시스템인 포스터 케어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면밀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포스터 케어 시스템에서 아동이 머무르는 기간은 대략 20개월 정도로 2년을 넘지 않는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반이 넘는 50%의 경우 출신가정과 재결합을 하며, 1/4 이 넘는 27%의 아동이 입양을 통해서 법적인 부모를 만나 가정에서 양육이 된다. 즉 미국의 포스터 케어 시스템은 출신가정과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동

이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출신가정으로 재결합이 이루어지든지, 혹은 입양을 통해 법적인 부모를 만나든지 둘 중 하나를 통하여 실질적인 가정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17 미국의 포스터 케어 아동의 이후 진로

항목	아동수 (명)	비율 (%)
가정재결합	242,800	56
다른 친척과 생활	12,141	3
입양	114,406	27
장기 위탁	9,012	2
자립	17,147	4
후견인	15,265	4
미확정	19,48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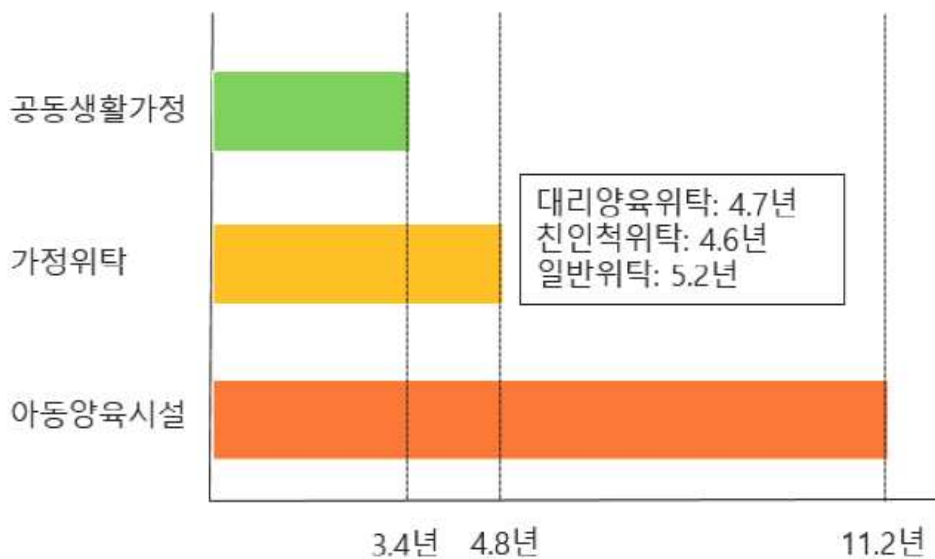


그림 5. 대리양육체계 보호기간

[자료출처 :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2,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김형태 외. (2018).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p. 152. 재인용.]

대한민국의 경우 그림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대부분 친권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신가정으로 재결합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제때 입양으로 연결되지 않아 아동이 양육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이 무려 11년 이상이나 되며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5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는 등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법적인

부모의 사랑과 보호 없이 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위기아동의 입양을 까다롭게 하고, 해외의 사례들을 들어서 위기아동을 가정위탁형태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접근법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도 가정위탁은 출신가정의 재결합 또는 입양을 통해서 법적인 부모의 보호아래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임시 조치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가정위탁 보호 시스템의 방향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결론

1) 위기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운데 가정에서 양육될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알권리’는 그 이후에 논의 될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위기아동 보호의 정책적 방향은 법적인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설정함을 통해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는 입양이 시설양육에 비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훨씬 긍정적이다. 따라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정인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게 하는 것보다 입양을 통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가정위탁 시스템은 위기아동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위기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위기아동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출신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입양을 통하여 법적인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양육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4. 참고 문헌

1.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 석광현, 이병화 -
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4.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5.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64>
6. 노혜련, 장정순, 백은형, 시설아동의 심리학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1997)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7.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2001) 한국아동복지학, 39(2), 135-149.
8. 성미영,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2006)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1), 17-29.
9. 이순형, 이해승, 초 · 중 · 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2002), 아동학회지, 23(4), 119-136.
10. 신소희,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고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1984)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1. 노혜련, 장정순,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아동복지학.
12. Frank, D.A. et. Al. L.,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orphanages: One view from pediatrics and child psychiatry. (1995) Pediatrics, 47(4), 569-578.
13. Pringle, M.L., & Bossio, V. Early prolonged separations and emotional adjustment, (1967)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 37-48.
14. Tizard, B., et. Al. ., The effect of early institutional rearing on the development of eight-year-old children, (1977),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99-118
15. 이순형, 이해승, 초 · 중 · 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2002), 아동학회지, 23(4), 119-136.
16. 주정일, 이소희, (1989) 아동복지학, 서울: 양서원
- 17 2015년도 (재) 중앙입양원 연구용역'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의 최종보고서
18.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
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2,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 김형태 외. (2018).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p. 152.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사례발표 3

1. 한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2. 사례로 보는 미혼모가정의 양육현실과 지원정책 방향

-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박리현 -



1. 한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해마다 출생률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노년 인구는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정부 주요 해결과제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정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거기에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28세 여성위원을 포진시키는 기이한 행위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다.

미래통합당에서 6월 25일 별도로 ‘저출생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배경에는 현 정권이 주도하는 젠더운동 중심의 저출산고령대책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실제 삶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당사자로 같은 처지의 한부모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 자격으로 저출생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유도 그 ‘실질적인 대책’에 흑해서다. 더군다나 그 대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로 공인받고 살기 위해서는 가난과 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 2019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한부모 수는 154만 명이다. 통계 밖 한부모는 더 많을 수 있다. 예컨대 출생신고 자격이 없는 미혼부, 이혼 조정중인 한부모,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한부모 등이 있다.

아무튼 한부모가 154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 냉정한 현실인 셈이다. 그럼 한부모들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은 많은가라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많다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 혹은 남자에 대한 세간의 따갑거나 혹은 안타깝거나 그도 아니면 살짝 무시하거나 하는 등의 사회적 편견은 둘째로 치자. 다만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 한 부모에게 직접 해당되는 정부 정책을 기준으로 하자.

먼저, 엄격한 기준 중위소득이다. 한부모 선정의 기준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한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다.

이 기준 중위소득 안에는 재산, 금융, 양육비, 차량 등이 포함되면 52% 이하인 가구에는 한부모증명서 발급과 함께 아동 양육비가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60% 이하인 가구에는 한부모증명서만 서류상 발급되고 지원은 없다. 이혼하면 자동으로 한부모가 되는 줄 알았던 기준초과 대상 한부모들은 실제적 진실은 한부모지만 국가는 한부모라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많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올해 4월 추가 지원 정책 중 하나가 소득특별공제 30%다. 일용직 근로를 하는 한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다. 2인 가구 기준 155만 원(중위소득 52% 소득기준)이다. 180만 원을 받는 일용직 한부모는 특별공제 30%를 받으면 155만 원을 기준을 유지하며 지원을 받지만 180만 원을 버는 상시근로자(4대보험)는 해당이 안 된다. 셈법이 복잡하고 경계가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일용직은 국가에서 한부모로 인정을 하고 상시근로자는 인정이 안 된다. 말하자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야 할 경우의 수도 있는 셈이다. 아무튼 가난하지 않은 한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돌봄’이다. 정부 운영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기’가 기본이다. 차례가 돌아와도 원하는 시간대와 날짜가 또다시 불일치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추가 비용 만도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한부모가 방과 후 교실 우선 순위 대상에 들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기준중위소득 안에 포함되는 한부모증명서 발급대상이어야 한다. 15개월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직장에 가기 위해 돌봄을 신청했지만 병원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도 있다. 한부모의 특성이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차량기준이다. 한부모 자격 차량기준은 10년 이상, 1600cc 이하, 차량가액 150만 원 노후 차량이다. 놀라지 마시라.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 이상이 아니다. 셋 모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엄청난 조건의 차량을 찾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역사지만 찾아서 등록 기준을 맞춘다 해도 문제는 이제 산을 넘는다.

일단 수리비가 보편적이지 못하다. 고장도 잦고 배기가스 기준도 항상 조마조마하다. 늘상 아이들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 이 노후차량의 안전성도 심각한 문제다. 아이들 짐보따리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가난한 살림에 집도 시 변두리일 확률이 크다. 이래저래 차가 필요한 한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차량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 차량도 가난해야 한부모가 된다.

원하는 건 차량기준 가액을 상향시키고 다자녀 한부모를 위한 차량등급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거다.

네 번째는 청소년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만 한부모 자녀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배부른 소리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안에서도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사회적 편견에 한 번 더 시달려야 한다. 그게 싫어 센터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인식 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결될 사안이다.

지리적으로 혹은 시간대가 맞지 않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현재로선 사교육 외에 대안이 없다. 비용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이조차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제도 밖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청소년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로 범위를 넓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문제다. 수도권 기준 지원되는 LH전세임대는 9천만 원이다. 가뜰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에서 이 정도 돈으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국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한부모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준이 만 7세 미만이며 한시적으로 완화된 만 13세 미만 1억 2천 내에 전세임대를 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매입임대나 임대아파트는 일부 소외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한부모들의 경제활동 영역이나 지자체별 지원정책의 차이로 인해 거주지 이동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부모들이 호소하는 공통의 어려움이 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한부모 소득기준을 맞추자니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돼도 기존 지원과의 차이를 감안하면 차라리 벌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계가 있다. 이럴 때 한부모는 자괴감이 든다. 돈을 벌자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문제도 공통되게 하소연하는 문제다.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가장 마음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사람이다. 사람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대책위원회라는 특별한 위원회가 필요해진 것도 사람 때문이다. 한부모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출생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한부모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출생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이 곧바로 출생이 많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궁핍하고 강박한 곳에서는 여간해선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정책부터 바로잡고 시작하자.

한부모지원정책의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저출생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몸부림에 충분히 기여하는 나비효과를 불러온다.

미래한국, 논단. 2020.07.28.일자

2. 사례로 보는 미혼모가정의 양육현실과 지원정책 방향

저는 미혼모 당사자이자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로 일하는 박리현입니다. 우리 단체가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함께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잘못 전달된 미혼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법의 보호 아래 아이와 미혼부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원가정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미혼한부모 단체 대표로 모든 아동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했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정에서 받는 사회적 편견과 어린 생명을 지키고 양육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미혼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첫째, 미혼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양육과 입양입니다. 정말이지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것이 인간 세상에는 무수히 존재합니다. 양육하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 할 처지의 상황들도 엄연히 실재합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이럴 때 투명하게 모든 걸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개인의 사적 정보를 숨길 권리가 무색해집니다. 출생신고서가 없는 아이는 아예 입양 자격이 없습니다. 미혼모의 출생신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입니다. 어떤 사정이나 형편 따위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을 두고 법 앞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된 미혼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불법이거나 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하거나 혹은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시설 또는 살해의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자 뉴스에도 그런 기사가 소개됩니다. 미혼모가 홀로 출산 후 입양을 보내려다 여의치 않자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저 어린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게 생모인지 입양법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원가정 이후의 가장 안전한 가정보호 제도인 입양을 안내해야 할 법이 오히려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 되어버린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내놓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제가 만나는 많은 미혼부모들은 양육하시는 분들조차도 입양의 긍정성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서 딱한 사정들을 누구보다 현실감 있게 목격하고 체험한 분들입니다.

둘째, 장애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장애 사실을 알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출산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홀로 장애아이를 양육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냉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 분은 정부의 지원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않아 동반자살을 세 차례나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미혼모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신고를 하고 둘을 분리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 신체에 학대정황이 없어 '분리가 어렵다'였습니다.

몸은 열 살이지만 정신연령은 한 살인 아이의 증언이 무색한 상황에 아이 엄마가 동반자살 시도 후 구조된 경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엄마가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모자가 살아갈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셋째, 세 살 아이를 혼자 두고 밤업소 일을 하는 미혼모였습니다. 빚이 많아 돈 벌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 분은 아이가 깨지 않고 잘 잔다는 이유로 저녁 8시까지 밤업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부터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이 분은 고발되어 아이와 분리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원가정복귀라는 아름다운 통계를 기록만 해주고 전혀 진전이 없는 같은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가정 안에서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지만 정책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미혼모가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겪는 생활고와 스트레스가 학대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대가 반복적으로 심한 경우 원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게 아동 이익 최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원가정과 모성에 대한 사회적 환상과 집착 때문에 학대 분리 후 복귀되어 친부모에게 살해당하는 아이들 소식도 계속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단지 친부모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방임과 정서적 심리적 학대 범죄를 가볍게 치부하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역시 엄마는 무조건 위대하다는, 환상에 가까운, 모성신화가 뿌리 깊은 우리 시대의 민낯입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영아유기를 막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는 한참 멀리 떨어진 법안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제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낙태와 영아살해의 유혹을 불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가적 난제이자 해결과제로 손꼽는 저출생 대책과도 직

결됩니다. 잉태된 생명은 출산으로 유도하고 출산된 생명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사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에 맞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제합니다. 당연히 원가정 우선입니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책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태시킨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원가정 양육이 오히려 아동의 삶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보호 원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가장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놓는 이유는 어떤 훌륭한 시설도 결코 부모가 있는 가정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앞서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은 없습니다.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사례발표 4

미혼부 가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 -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사녀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재개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언

-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 남성 - 전문용어 홀아비
- 現)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비상임이사
- 現)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가족다양성분과 위원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꿈' 대표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9기
- 사랑이법 당사자
- 성폭력 상담사
- 청소년학 석사
- 문제장병 관리와 자살예방 연구
- 육군 대위 전역
- 문제장병 전담 중대장(지능미달, 탈영, 폭력사고 등 부대부적응 병사)
- 군생활상담관
- 태권도, 유격, 폭파, 폭파, 저격, 생존 교관



1. 개요

- 취지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조치 사각이 발생함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
- 목적
 - 1) 미혼부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과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의 즉시 적용으로 아동의 복지 사각 감소
 - 2) 이미 만들어진 좋은 제도를 활용 못함으로 발생하는 정부기관의 부정적 이미지 발생 예방
 - 3) 출생신고 완료 전 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공적개입/주관

미혼부 자녀의 유형

유형별 소송방법 / 지원되는 복지 상이

- 모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랑이법
- 모가 외국인(근로자/학생 등 합법적인 체류)인 경우
- 모가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 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모가 사실 상 혼인관계가 파탄 중에 혼외출산 한 경우
- 모가 가정을 유지 중 이면서 외도에 의한 혼외 출산 한 경우 - 없음
- 모가 출생신고만 해주고 함께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2. 내용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적용 및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안내’

- 가정법원에 소송접수 전 아동은 적용 받기 힘들
- 기존 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홍보 부족
- 미혼부 자녀들의 의료복지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 불가
- 일부 주민센터 및 구청의 미흡한 정보로 인한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
-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제도 활용과 홍보가 시급함

2. 내용

출생증명서가 없는 출생신고 소송 이전의 아동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조차 발급받지 못하고 있음

- '사랑이법'을 적용 해야하는 아동,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 으려면 가정법원에 출생신고 소송 접수증이 있어야 함
- 유전자검사도 가정법원에 접수 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父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만 검사가능
- 친생부의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 소송 접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수개월~수년) 만큼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 (국가가 지자체도 손 놓고 방치) / 부친사례
- 위 경우의 아동들은 최소한의 복지에도 사각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경우 아동의 보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 부여가 필요
- 주민센터 또는 통합사례관리사의 방문 실사를 통한 면담 조사 결과를 출생증명서나 법원 접수증의 대체 근거로 활용 필요

출생증명서가 없는 출생신고 소송 전의 아동은 '건강보험 적용, 보육료,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생녀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언

○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안내

● 출생신고 완료 전 건강보험 적용가능

- 미혼부께서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 병원방문시 '신청이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못 받은 경우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이 리플릿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 출생 후 1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가능하며, 1년 이후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적용가능
- 담당자께서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수진자 성명란에 '미혼부 000의 아기'라고 쓰세요
 -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방법' 남·여 구분(3 또는4)를 기재 후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주세요
 - * 서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 쌍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아이 1, 둘째아이는 2로 기재

(예시) 2016. 1. 1. 출생한 남아의 경우

구분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보통신암 또는 전신대체	미혼부 000의 아기	1601013000000
서명	미혼부 000의 아기	160101-3

처리근거: [복지부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영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P.391 '신청이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3. 예시

표 - 2020년 6월 기준
아래 표의 아동 외 2명 추가

No.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획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없음
1.	순천 덕암동 아가(생후16개월 차)	부산 용호동 아가(생후6개월 차)
2.	서울 화곡동 아가(생후24개월 차)	서울 마곡동 아가(생후3개월 차) - 베이비박스 → 아동보호시설
3.	부천 상동 아가(생후14개월 차)	인천 청학동 아가(생후2개월 차)
4.	양평 양동면 아가(생후 7개월 차)	아산 북수리 아가(생후7개월 차)
5.	부천 송내동 아동(생후60개월) → 출생신고 소송 각하	보령 대천동 아가(생후3주 차)
6.		안양 비산동 아동(생후38개월 차)
7.		이천 창전동 아동(생후50개월 차)

4. 사후조치요청

- 위 내용(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적용)에 대한 규정 및 지침 제정 후 안내 공문 및 교육자료, 리플릿 등 제작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심사평가원, 지자체, 지역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에 위 내용을 공문 등으로 전파 및 리플릿 등 안내자료 상시 비치
- 주민센터 한부모 담당 인지 및 주민센터 리플릿 상시 배치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홈페이지 안내 및 리플릿 상시 배치
- 산부인과 · 소아과 등 의료기관 내 리플릿 상시 배치
- 안내자료, 공문은 반기단위 반복적 전달이 필요
-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서 적절한 의료복지 지원이 가능해야 함

5.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 / 주관

- 현재 미혼부 : 출생신고 완료 전의 재녀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음.
- 유전자검사의 악용 방지를 위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친권이 있는 부모 모두의 동의 필요.
- 출생신고 관련 소송 접수 후 평균 2주~4주 뒤에 나오는 유전자검사 보정명령이 있거나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야지만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친생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 관련 소송의 접수 장기간(수개월에서 수년)소요됨.

5.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 / 주관

- **실예 : 부천의 한 아동은 5세가 된 2020년 연초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접수하였고 2월 보정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나 친자불일치의 결과가 나옴)**
 - 이러한 경우가 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상황은 아동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
 - 아동은 하루 아침에 아빠 마저 없는 처지가 되고 보호시설로 보내져야 함.
 - 아빠 또한 많은 것을 잃고 자식을 지켜 왔으나 부자의 연이 끊어 지게 됨(입양가능성도 없음)
 - 대부분의 미혼부: 중증우울증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 떠나간 친생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큼.
 - 그분노와 원망 -> 친생모 + 그녀의 아이. 해당 아동의 신변 장담하지 못함.

5.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 / 주관

- 친권이 없는 성인(남,녀)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건 불법 임
-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을 친권이 없는 성인이 보호해도 되는 지 확인하는 제도조차 없음
- 이러한 경우가 발생 가능한 단1명의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전자검사의 공적 개입이 필요
- 개인(친부,친모)에게 유전자검사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님. 유전자검사, 개인정보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해 더욱 공적 개입과 주관이 필요함
- 개입가능 한 공적기관 - 구청급 지자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법원 등
- 출생신고 관련 소송의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발급 근거로 활용가능

6. 기대효과

- 출생신고 이전의 미혼부 재녀에 대한 아동의료복지 사각 감소
- 저소득 미혼부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미혼부의 양육포기 및 미혼부 재녀의 출산포기 예방
- 이미 만들어진 좋은 제도의 활용 불가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부정적 이미지 발생 예방
- 현재 파악 조차 안 되고 있는 출생신고 이전의 미혼부 가정 · 재녀의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여 공적 관리가 가능함.
- 출생신고 완료 전 아동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통계청 통계의 미혼부가정 수는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이 된 가정만 파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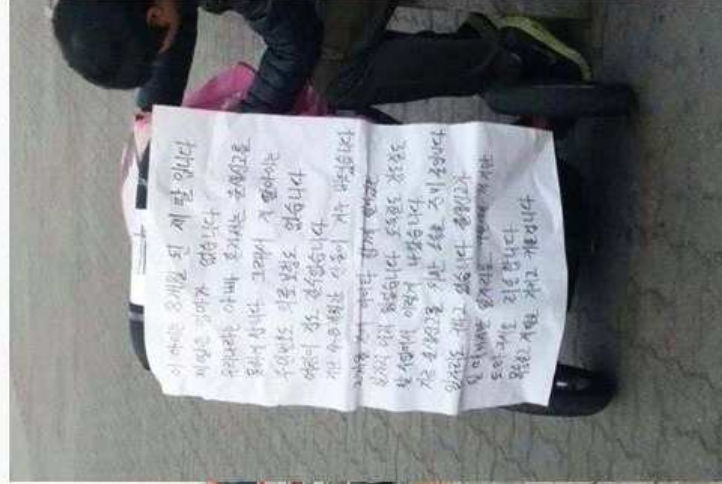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새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언

7. 활동모습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사녀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언

7. 활동모습



7. 활동모습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재녀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언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사례발표 5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제안서

- 선한울타리 설립자 대표 최상규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 제안서

선한울타리 설립자 대표 최상규

1. 제안자 소개

선한울타리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이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역하는 국내 선교단체입니다.

2015년 보육원을 퇴소한 2명의 청년이 선한울타리 샘물교회에 입소한 이래로 2020년 현재 총 6개의 교회에서 36명의 청년들이 선한울타리를 통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샘물교회에서 시작한 사업이 지구촌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자양교회(2019년 사역 중지), 광민셀교회, 뉴비전교회로 퍼져나갔고, 내년에는 예수향남교회, 온누리교회, 합성감리교회 등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울타리는 순수하게 교회에 뿌리를 둔 자원봉사단체로서 섬기는 분들은 모두 자원 봉사자로서 단체로부터 월급을 포함한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없으며 오로지 입소하는 청년들을 위한 숙소(울타리)를 늘려서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입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이유

지난 6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양육된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가 거의 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소하여 현실 사회에서 겪는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또 하나의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은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여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자신과 같은 요보호 아동을 출산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마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래 집단보다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훨씬 큼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생활환경의 특성상 지지와 격려,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켜도 내적 동기와 책임감 등의 부족으로 장기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울증이나 게임중독 등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3. 정책제안 내용

- 1) 경제지원: 자립정착금 표준화 및 디딤씨앗통장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 지원
- 2) 주거지원: 1인 입주 자립관 건립, LH 공사의 지원제도 현실화 등 안정적 주거 제공
- 3)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역전문 자립지원센터 운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앱'의 개발(확정)
- 4) 교육지원: 취업교육 상시 무료 재교육 가능, 대학교 학비 지원 현실화
- 5) 취업지원: 정규직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관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 6) 법률지원 : 보호종료아동 대상 범죄예방교육, 무상법률지원
- 7) 경계선지능 이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 8) 아동복지의 중앙정부 환원 필요성

4. 보호종료아동 현황

대한민국은 매년 약 4,000명 이상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입양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들은 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동들은 대학진학, 장애 등으로 퇴소유예가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자신들이 살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 매년 보호종료아동의 숫자

매년 2,600명이 넘는 아동들이 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퇴소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육원을 퇴소하는 숫자는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5. 보호종료아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

- 1) 보호종료아동은 자립 가능한 성년이 아닌 퇴소 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부족
- 2) 주거, 취업, 학업, 건강, 심리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부재

6. 정책 제안 세부 내용

1) 경제적 지원

■ 자립정착금 표준화 및 디딤씨앗통장제도 개선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는 유일한 재정적 지원은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자립수당(3년, 30만원 지원)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400~500만원(인천시 800만원) 정도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정착금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은 일반후원자와 지자체가 매칭펀드(최대 5만원+5만원)를 하여 퇴소 시 500만원 전후의 후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나마도 후원자가 있을 경우에만 후원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을 합하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에 사회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이 홀로 자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저축할 자립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개월 내 가지고 나온 돈을 모두 소진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원에 있는 동안 부모로부터 용돈이나 핸드폰 요금 등을 아동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로 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안됩니다. 퇴소 전 1년 동안의 은행계좌(금융정보)를 확인하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받은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시킵니다. 이는 퇴소 후 월가정 복귀가 실제로 불가능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입니다.

또한, 퇴소 후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등록을 위해서는 월가정과의 관계단절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에게 상처와 거짓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종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되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수급자 지

원에 있어 원가정의 지원금액 기준이나 원가정과의 관계단절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재정악화 때문인지 조건부 수급자로 3개월만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주거 지원

■ 1인 거주 가능한 자립관 건립

서울의 경우 보육원을 퇴소하는 아동들이 3년 정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자립관이 3개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자립관이 시도별 1개 정도로 매년 보호종료아동 수에 비하면 수용 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부모가 나타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보호자가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안전한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퇴소 후 최소한 3년 정도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자립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보육원 퇴소생을 위한 자립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립관의 형태는 원룸 형태의 1인 거주가 가능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과 구별되는 다인용 주거형식은 사회로부터 ‘시설 퇴소생’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낙인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대상자들이 입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 LH공사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제도 현실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원룸 전세 물건이 매우 드물고, ‘위법건축물’의 승인거절 등 비현실적인 심사기준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임대 및 중개를 꺼리는 바람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위법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19년부터 이로 인한 승인거절로 더 위험한 고시원이나 형편에도 맞지 않은 월세를 살게 됨으로써 더 심각한 ‘주거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으로 원룸전세를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세지원금액을 부동산시장 시세에 맞추어 인상하여 주십시오. 드물게 물건을 찾아 공사가 지정한 법무사에 심사를 의뢰해도 승인이 나는 데 까지 시간이 걸리고, 다시 LH공사에서 정한 법무사가 나와서 계약을 하는데 까지 추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기다려 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합니다. 성인이 되면 1~2%의 이자를 매월 지불해야 하는데 보육원 퇴소생들의 평균 월소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퇴소 후 5년 동안 이자의 50%를 감면하고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이자를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 월세 지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LH전세 물건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원 퇴소생의 경우 LH전세를 얻지 못할 경우 불가불 월세를 얻어야 하는데, 이들의 월평균 급여에 비해 원룸월세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보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임대의 어려움을 고려

한 일정기간의 현실적인 월세지원이 필요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안내

보호종료아동은 임대주택신청에 있어 정보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3) 자립지원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역전문 자립지원센터 설립

비록 한국아동복지협회나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보호종료아동들이 생활하면서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고충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지역의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보호종료아동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종합적인 자립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이고, 단지 보호치료, 심리치료 등 개별적인 항목의 상담을 해주는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거, 취업, 정서 등 여러 방면에서 퇴소 후 수년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나이 어린 보호종료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필요한 지역전문자립지원센터는 모든 시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각 지역의 공무원, 전문가, 기업체, 종교단체(이단 사이비 단체 배제),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지원된다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앱’의 개발 (확정)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거, 취업, 교육, 상담 등의 다양한 정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정보제공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퇴소하는 아동들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위에 열거한 퇴소 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앱’을 개발하여, 퇴소 전에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보육원을 퇴소한 후 자립담당요원과 연락이 끊어지거나, 보육원의 미온적 지원태도로 인한 정보의 단절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앱’을 개발하여 퇴소하는 아동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면 그 플랫폼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용한 정보들이 보호종료아동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 취업교육 상시 무료 재교육

보호종료 전 취업이나 직종에 대해 갖고 있던 꿈은 현장에서 취업의 경험을 통해 대부분 변경됩니다. 또한 직장생활 중에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원하기도 합니다. 보호종

료아동의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상시로 무료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대학교 학비/생활비 지원의 현실화

최근들이 보호종료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졸업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C학점을 받지 못하면 장학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LH임대를 이용하며 생활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로는 학비 이외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C학점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육원 재원 시에도 학원 등의 사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대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힘듭니다. 많은 경우 성적이 안 나와서 장학금을 못받게 되고 휴학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생활비 지원이나 대학교 재학 중의 자립수당 지원의 기간을 연장하여 현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취업 지원

■ 고용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취업 후 사내 멘토링, 취업시 가산점, 직업 훈련 제공

사회에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매우 강인할 것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로 취업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을 고용한 회사는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취업 후에는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들이 직장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직장 내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시험 가산점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법률지원

■ 보호종료아동 대상 범죄예방교육, 무상법률지원

퇴소 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소진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많은 경우가 생계의 곤란 중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보육원 선후배를 통해서나 각종 SNS상의 가출청소년이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유혹에 빠져 핸드폰 소액결제, 대포통장, 신용카드 대출, 사업자등록 후 각종 물품 렌트 후 작물업자에게 넘기는 수법 등으로 단기간 안에 수천만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보육원 재원 시에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미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채무와 법적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7) 경계선지능이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통계상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약 8%가 경계선지능 이하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지난 6년간 이 사업을 하는 중에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30% 이상이 경계선지능 이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면 70% 이상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지능지수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정서적 자극, 감각적 터치를 통하여 지능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경계선지능 이하의 경우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한 방에서 8~10명의 아동이 2명의 사회복지사의 24시간 교대 근무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과 비교하여 부족한 관심과 자극 중에 자라나게 됨으로써, 아이들의 지능지수는 태어날 때보다 도리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아이들도 보호종료 후에 자립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능의 문제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며, 취업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고 장애인증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경계선지능 이하의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적절한 노동 시간, 노동강도, 생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급여수준, 범죄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공공후견인제도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8) 아동복지의 중앙정부 이관 필요성

이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대부분의 복지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의 복지를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만이 지자체에 남아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은 국가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당사자 이익단체가 거의 없었고,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주홍 글씨같이 느껴져 앞으로 나서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조차도 아동복지(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동안 아동복지 중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의 복지는 최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하루라도 속히 아동복지를 중앙정부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기재부는 보육예산을 핑계로 더 이상 아동복지의 중앙정부 환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사례발표 6

내가 경험한 국외입양

-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회장 정애리 -



내가 경험한 국외입양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회장 정애리

한국전쟁 발발 후 참전한 UN군인들과 한국 여성 사이에 많은 혼혈고아가 발생하였다. 당시 혼혈인에 대한 지독한 배타성과 유교적 도덕주의가 팽배했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사회 적응을 우려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아동 양호회’라는 기관을 설립, 1954년 혼혈고아 4명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서 국외입양이 시작되었다. ‘한국 아동 양호회’는 현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의 모체다. 국외입양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도 ‘한국 아동 양호회’를 통해 8명의 혼혈고아를 입양하면서 한국에서의 입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국내 영 유아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고아들과 미혼모 아동들의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까지 국외입양을 하는 3개 입양 기관을 포함하여 50년대에는 20개가 넘는 구호 기관과 해외원조 기관들이 국외입양을 진행했다. 전쟁 후 한국 사회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6,7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구호 기관들은 국외입양 사업을 중단하였고 해외원조 기관들은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국외입양 변천사를 거치며 모국 방문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1990년대까지 국외입양된 아동의 수는 16만 명(보건복지부 통계)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표된 통계는 90년대까지 활동했던 4개 해외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들의 누적 통계다. 80년대 이전 중단한 입양기관과 해외로 철수한 원조 기관들에서 진행되었던 국외입양 아동수는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통계에서 빠지고 사라진 아동들의 기록을 찾는 것은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국외입양에 관한 기사와 모국 방문 후 가족을 찾는 국외 입양인들의 인터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외 입양인들이 모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을 때는 ‘88 서울올림픽’이후부터다.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외 입양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 친부모가 있는 나라에 관심을 끌게 되었고 내면적 의문으로 품고 있던 뿌리에 대한 궁금증과 정체성 회복 욕구는 자연스럽게 모국 방문으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는 국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친가족을 찾는 모습을 언론매체를 통해 목격하면서 국외입양과 국외 입양인들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게 되었다. 국외입양인 입장에서 모국으로의 귀환은 너무나 당연한 전 생애에 걸친 과업(life-long process)이었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알 권리 차원의 귀환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당시 국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사건이었다. 그전까지 한국 사회는 국외 입양된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는 국외 입양인들의 귀환으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좋은 나라에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적응에 실패해서 돌아온 건가?” “키워주지도 않고 버린 부모를 뭐하러 찾으려 하는 걸까?” “국외 입양인의 생모는 대부분 미혼모로 새로운 가정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뿌리 찾기’가 그 오히려 생모의 삶을 뒤흔드는 건 아닐까? 이런 저런 이유로 귀환하는 국외 입양인들에 대해 한국 사회는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와 우려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울러 귀환하는 국외 입양인들의 삶을 다룬 언론 보도를 접한 한국 사회는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정부와 입양기관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회여론을 조성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991년 상영된 영화 ‘수잔브링크의 아리랑’은 국외 입양인들의 삶을 학대, 자살, 절망, 방황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포획해버렸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국외 입양인들의 귀환에 대해 안정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혹감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1997년 국외 입양인들의 귀환을 돕고 모국으로부터 두 번 버려졌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비영리 단체 ‘가족사랑회’를 발족하였다. 이후 모국 방문하는 국외 입양인들을 돕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국외입양인 사후 기관인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이하 ‘잉카스’)로 발전하였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잉카스’의 중점 목표는 국외 입양인들과 입양 가족들이 모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들의 눈과 입과 발이 되어 모국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활동 결과 국외 입양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력에 통역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대학생 통역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국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을 돕기 시작한 계기는 1999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성인입양인 모임 세미나 참석이 동기가 되었다. 세미나 발표 후 한 여성 입양인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우리가 한국에 가도 됩니까?”. 나는 당황했다. 그녀의 질문은 중의적 표현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물었다. 그녀 질문은 두 가지 의미였다.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는데 과연 한국 사회는 나를 환영해줄지에 대한 두려움과 가더라도 언어와 낯선 땅에서의 막연함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한민국은 국외 입양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시작이 전쟁고아와 보호가 절실했던 아이들에게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의 가장 최선의 노력이었으며 언제든지 모국을 찾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진심으로 환영해줄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안전하게 모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녀는 두 달 후 내게 이메일을 보냈고 곧 모국 땅을 밟았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국외 입양인들이 가지는 오해와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을 위해 매달 해외 18개 도시를 방문하며 국외 입양인과 가족들을 만났다. 다음 해인 2000년부터는 미주, 구주에서 국외입양인 한국문화 캠프에 문화 강사들을 파견하여 매년 2천 명이 넘는 국외 입양인과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 역사, 음식, 음악, 전통무용과 전통공예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국문화 캠프는 국외 입양인과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 모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전국에 영어와 불어가 가능한 대학생들을 모집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국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을 돕는 전문 통역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 봉사자 수가 현재까지 2만 5천여 명에 이른다. 2001년 이후부터는 세계 각 지역에서 매년 7개 그룹 24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국방문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중 15개국 40명의 성인 입양인으로 구성된 'InKAS 써머캠프'는 매우 유명한 모국 방문 캠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모국을 방문한 국외 입양인들은 모국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차츰 극복하면서 친가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있어도 상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거절은 국외 입양인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고 절망감이 깊어졌다. 국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

미국 입양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가능한 한 빨리 친생 가족을 만나 뿌리를 회복한 입양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연, 해고, 이별 등을 겪는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했다. 입양 자녀들이 친생부모를 찾고 싶은 욕구는 입양가정이나 양부모와의 관계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별개 문제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친부모를 찾는 것이 양부모와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친생 가족과의 상봉 전후로 가장 큰 문제는 문화와 언어 차이다. 상봉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 이질적인 문화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오해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국외 입양인들은 통역 없이 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전하며 대화하고 싶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자유로운 소통에 대한 이런 욕구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로 이어졌다.

우리 단체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2001년 한국어 장학생을 선발하여 10명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고 발전했다. 2005년도부터는 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서울 시내 10개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 150명에게 한국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20개 대학으로 MOU가 확대되었다.

한국어 장학금 지원은 국외 입양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했음은 물론 일부 입양인에게는 모국 대학에서의 석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결혼과 취업과 자립 정착을 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국외입양 사후관리 중심이론은 국외입양으로 '상실된 문화의 회복', '상실된 언어의 회복', '상실된 뿌리의 회복'으로 회복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활동은 자연스럽게 국외 입양인들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져 왔지만, 결과적으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중심이론인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본 단체는 현재까지도 세 가지 핵심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하며 당사자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새로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한국 사회에 귀환한 국외 입양인들의 설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한국 국적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한국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재능을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 양부모의 학대와 백인 사회의 인종차별에 시달렸다는 입양인들을 만났을 때 국외입양이 아닌 국내 시설이 좋은 대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 많은 국외입양인들 중 학대를 경험한 입양인은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외입양을 불평했던 입양인들도 국내 보육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친생부모와 만남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걸 목격했다. 그들은 국외입양이 자신들에게 행운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국을 방문한 성인 입양인 중에 다시는 양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던 입양인이 모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양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보호아동 보호는 시설보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양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 확신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을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입양인의 삶에 대한 소중한 교훈 중의 하나이다.

#참고

<국외입양인 실태조사>.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인원은 1,030명으로 남성 336명, 여성 69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고, 나이는 20대 28.2% 30대 45.7%, 40대 이상이 26.1%로 조사되었다. 국적은 미국(42.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덴마크(15.0%), 프랑스(11.7%), 스웨덴(11.5%), 네덜란드(7.2%)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3.0%, 기혼이 31.6%로 조사되었고, 이혼·별거·사별과 약혼자가 있는 비율은 미비하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76.0%로 2/3를 상회하여 국외 입양인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비율은 81.4%로 국외 입양인의 4/5가 취업자로 나타났고, 근로 형태는 전일직이 77.2%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다. 직업은 국외 입양인의 78.9%가 전문직·기술직·사무직·행정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수입은 6만 불미만이 62.6%, 6만 불 이상이 37.4%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인다.

국외입양인 가족 특성으로는 유자녀 비율이 33.8%로 나이 및 혼인상태를 반영하며, 평균 자녀 수는 1~2명이 7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 중에 입양 자녀가 있는 비율은 6.1%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평균 입양 자녀 수는 1명이 57.1%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2명 이상도 42.9%로 많았다. 동거 형태는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2/5이었고, 혼자 사는 경우도 1/5이나 되고 있다. 현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근교가 77.6%로 대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 부모 조사는 입양모가 84.6%, 입양부가 15.4%로 입양모가 5.5배 많게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97.8%, 이혼은 2.2%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외 입양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체로 국외 입양인의 부모는 30~40대 중장년층의 백인으로 고학력 고수입의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입양인들의 입양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입양 당시 국외 입양인들의 나이는 대부분 3세 미만이었으며, 1세 미만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20대 이하 입양인의 경우 84.2%가 1세 미만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양된 국가는 주요 입양국의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였으며, 과거 유럽국가들에 입양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입양 부모의 인종은 대부분 백인/유럽인이며, 입양 부모의 학력, 직업, 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양인들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평가되고 있는 국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달리 매우 긍정적인 조사 결과이다.

노르웨이 입양기관 조사에 따르면 70%~80% 이상은 입양국에서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10%~15% 정도가 노르웨이 현지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르웨이 출생인들보다 적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외입양이 매우 부정적인 비난과 달리 사후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수치를 보인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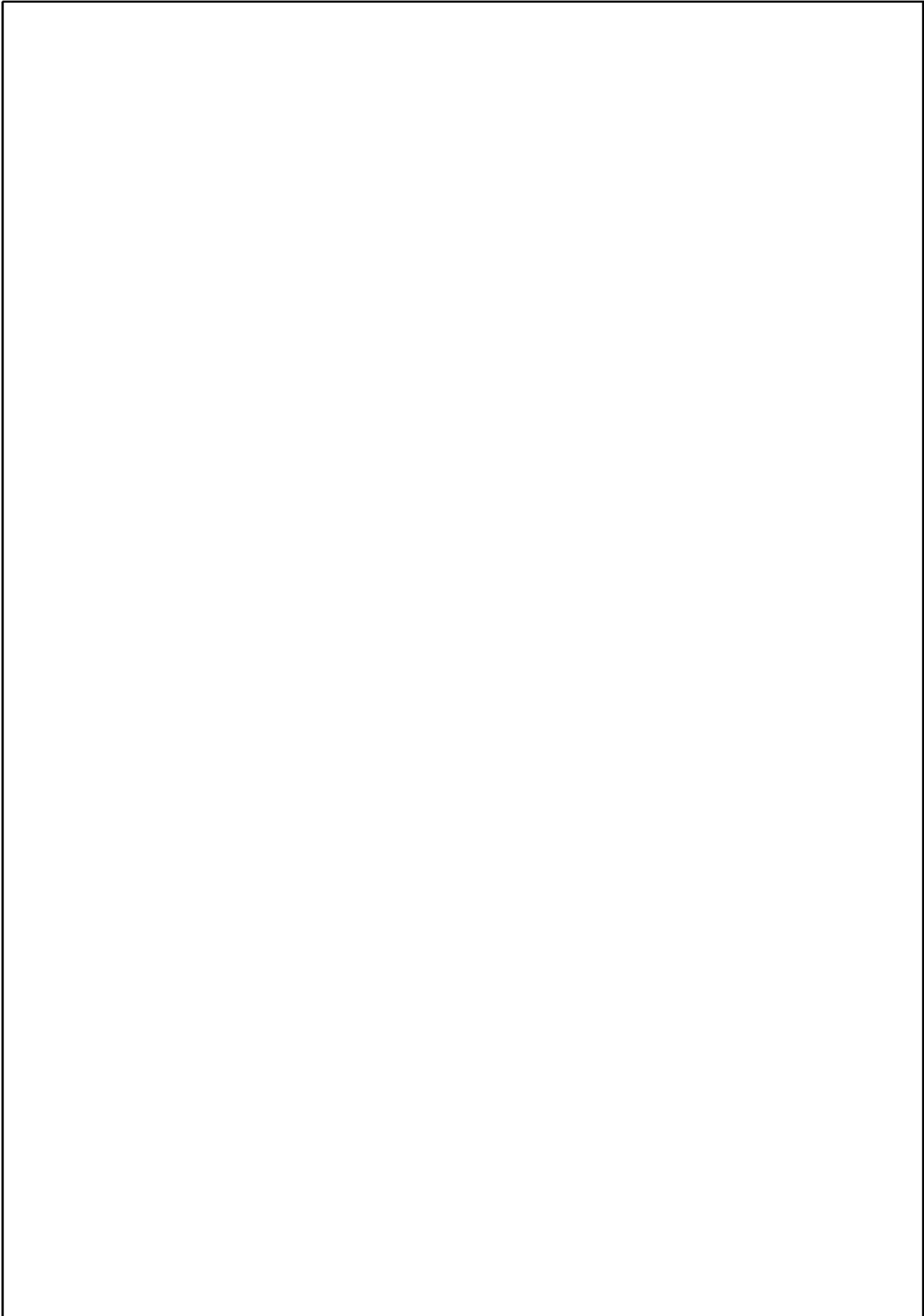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보호 프로그램을 상호 간 비교 검토하며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매우 필요할 때다. 비교 조사를 통해 앞으로 아동들의 권익이 최우선시되는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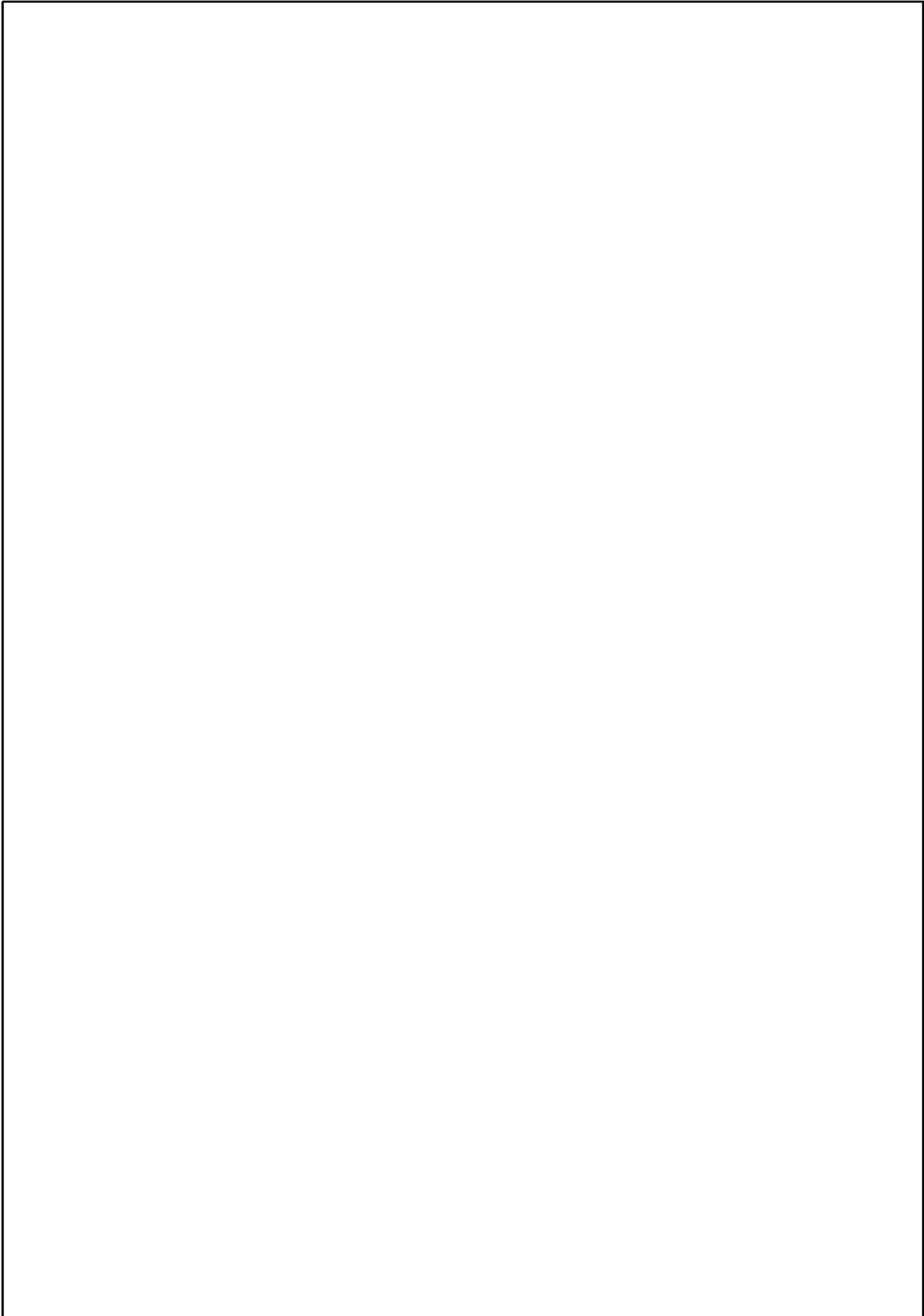
“지켜진 아동의 개인정보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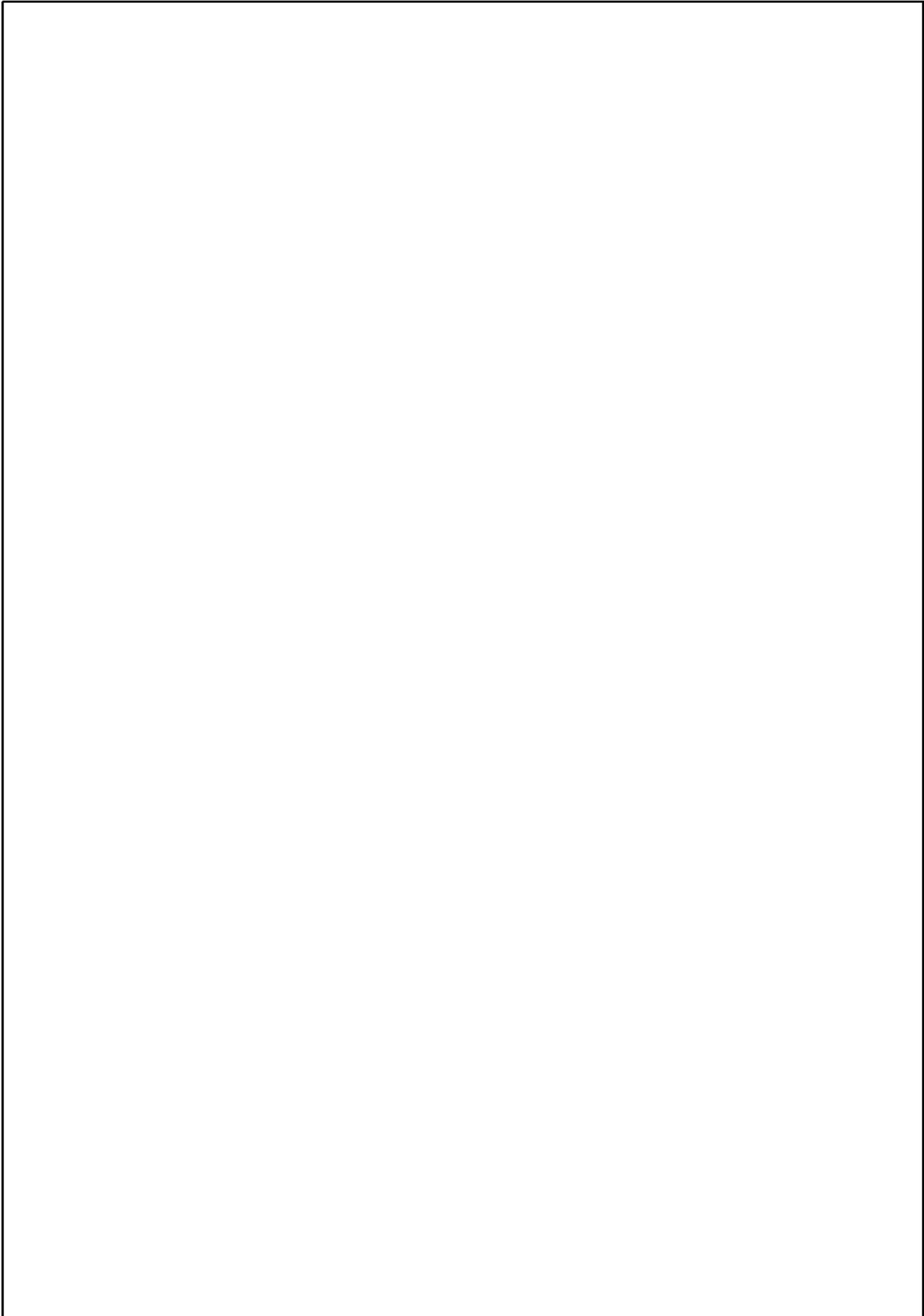
제2회 국회 개인정보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Ⅲ. 종합토론 및 질문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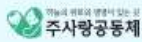
1.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미혼모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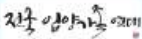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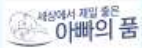
참여 시민단체



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InKAS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9년 11월 발표된 아동복지 분야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가 2018년 기준 시설보호율이 62.5%, 가정보호율은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보호아동 발생율은 과거로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은 그 나라의 문명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인권기준 중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아동의 시설보호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게 공동체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시설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다는 의식문화가 여전합니다. 나라는 경제대국이어도 아이들에게 나눌 예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방기하고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단체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락**

現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現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운영자
주사랑단기보호센터 운영위원장
생명사랑국민연합 공동대표



조직구성



공동대책위원회가 하는 일

- 행동1. 베이비박스 보호아동 가정보호 활성화 정책대안 마련
- 행동2. 출산사라법(미혼모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 법안 통과를 기자회견
- 행동3. 보호아동의 입양활성화 정책대안 마련
- 행동4.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실시
- 행동5.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을 위한 1인 시위



참여단체

- | | | |
|--|-----------------------|----------|
| |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 이종락 담임목사 |
| | 전국입양가족연대 | 오창화 수석대표 |
| |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 김지환 대표 |
| |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 박리현 대표 |
| | 한국고아사랑협회 | 이성남 회장 |
| | InKAS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 정애리 회장 |



- 2019.12.12** 국회본청 정론관 “가정보호우선정책 촉구” 및 “비밀출산특별법 국회상정 촉구” 기자회견
- 2019.12.30** (가칭)가정보호 공대위 준비위원회 회의 협의
 협의단체 : 주사랑공동체, 전국입양가족연대
- 2020.01.03** 1차 가정보호공동대책위원회 회의(공대위 조직구성 및 가치와 목적 공유)
 참여단체 : 주사랑공동체,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고아권익연대
- 2020.01.20** 정식 단체명 결정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미혼모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 ⇨ “**출산사랑법**” 통칭
- 2020.02.17** 국회본청 정론관 오신환 국회의원 “**출산사랑법 국회 상정**”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참여단체 : 주사랑공동체,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고아권익연대,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 2020.02.20**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단체 대표자 모임
 단체장 연대발언, 공대위 조직 확정 및 발족식, 직접행동결의, 제2회 국회가정보호컨퍼런스
- 2020.06.15** 김미애 의원 주최(국민의힘) “**빼어버박스 보호아동 입양을 제고를 위한 정책간담회**” 실시
 참여기관 : 주사랑공동체,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입양기관 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 2020.11.03** 제2회 국회가정보호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공동주관 : 주사랑공동체,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총괄사무국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165-1 4층 (우편번호 08621)

실무자 : 총괄사무국장 양승원 010-5594-9553 / 실행사무국장 김지영 010-2473-7441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00
----------	-------

발의연월일 : 2018. 2. 7.

발 의 자 : 오신환·하태경·유의동
홍철호·김수민·권은희
김관영·김중로·정운천
이동섭 의원(10인)

제안이유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며, 인간의 생명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음.

부모는 영아를 양육할 1차적 책임을 지나 국가는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영아 보육을 위한 제도를 보장할 의무를 지므로 국가와 부모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영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해야 함.

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아가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되 한편으

로 모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비밀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나아가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 다. 비밀출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상담대상자의 신원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비밀출산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마. 임신으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려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어 갈등과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바. 직접 영아의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률 지원제도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사.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영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의 장단점과 입양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양을 소개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 아.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출산 외에도 긴급영아보호소의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두고 상담기관은 긴급영아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탁된 영아에 대해서 의료인의 검사와 진단을 거쳐 입양절차 등을 개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6항).
- 자. 긴급영아보호소에서는 영아를 위탁하기 전에 상세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친생모가 영아를 포기하는 것을 숙려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에 대해 알권리와 영아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와 영아에 관한 신원과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남겨두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차. 긴급영아보호소에 자녀를 위탁하는 행위를 「형법」상 유기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도록 함(안 제8조제8항).
- 카. 상담기관에 비밀출산 의사를 밝히거나 긴급한 출산으로 의료기관에 의하여 비밀출산임이 상담기관에 통지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비

밀출산 전후로 임신부의 신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비밀출산 이후 영아를 보호하며 출생신고, 후견 및 입양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비밀출산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타.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으로 출산하게 되는 영아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아의 출산 직후 가정법원에 출생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

파. 출생증서에는 친생모의 성명과 주소, 자녀의 이름, 출생일자 및 출생장소, 상담기관의 명칭 및 담당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밀봉한 후 봉투 표면에 자녀의 출생증서가 있다는 사실과 친생모의 가명, 자녀의 출생 장소, 출생일, 상담기관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하. 영아의 출생 후에 상담기관은 출생증서를 작성한 이후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거. 비밀출산을 하는 친생모의 친권은 정지되고 즉시 후견이 개시됨(안 제11조제1항).

너. 비밀출산 이후 영아는 「입양특례법」 제9조제2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의학적 돌봄을 받으며 입양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됨(안 제11조제2항).

더. 친생모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입양허가청구인용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친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러. 비밀출산된 영아에 대한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친생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가 중단되고 자녀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자녀의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취소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 모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출산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출산”이란 임산부의 임신 및 분만사실과 신원을 비밀로 하여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비밀출산에 대한 상담 및 임산부에 대해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에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긴급 영아보호소”란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영아를 출산한 후에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영아를 위탁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5. “출생증서”란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출생 당시의 정보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게 산전·산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임을 진다. 이때 임산부가 스스로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건강권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비밀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상담기관 등의 설치·운영

제4조(상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상담원의 의무 등) ① 상담원 또는 상담원이었던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상담내역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상담대상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방식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상담기관은 비밀출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지원) ①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유도하고, 이후의 상담을 통하여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 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비밀출산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담기관은 임산부와 상담을 위하여 임산부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던 임산부가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청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등 각종 법률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자녀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입양절차와 요건 및 국내·국외 입양 소개와 장단점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상담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상담기관을 통하여 보호시설의 입소를 신청한 경우, 상담기관은 임산부의 경제적, 사회적 곤경의 정도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긴급영아보호소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긴급영아보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친생모가 경제적·사회적인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본인의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대로 인한 부상이 없는 생후 30일 이내의 영아에 한정하여 익명으로 긴급영아보호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긴급영아보호소는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유도하고, 이후의 상담을 통하여 비밀출산을 통한 출생신고와 그 법적 효과, 임

산부의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 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비밀출산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긴급영아보호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아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영아 위탁의 법적 의미, 입양 절차, 영아를 돌려받고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양육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제도와 방법 등을 상담하여 영아 위탁에 대하여 숙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탁한 영아의 이름, 친생부모의 성명과 주소, 출생 일자, 출생 장소, 영아의 병력(病歷), 친생부모의 병력이나 유전병 등 의료적 특이사항 등 영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하여 기록을 남겨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영아를 긴급영아보호소에 위탁한 친생모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긴급영아보호소에 종사하는 상담원 등이 친생모의 신원을 알게 된 경우 비밀을 유지하고,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한다.

⑥ 긴급영아보호소는 위탁된 영아에 대하여 즉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검사와 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탁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긴급영아보호소에 위탁된 영아의 보호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이하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따른다.

⑧ 긴급영아보호소에 자녀를 위탁하는 것은 「형법」 제271조 이하에 따른 유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비밀출산에 대한 지원

제9조(비밀출산 지원) ① 상담기관에 비밀출산 의사를 전달하고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고 본인의 신원을 밝힌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비밀출산을 할 수 있다.

②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으로 출산하게 되는 자녀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생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친생모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자녀의 성명
3. 출생일자 및 출생장소
4. 상담기관의 명칭 및 담당자

③ 출생증서는 밀봉하고 봉투 표면에는 자녀의 출생증서가 있다는 점과 친생모의 가명, 자녀의 출생 장소, 출생일, 상담기관 등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의료기관은 비밀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밀출산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0조(비밀출산 이후의 출생신고) ① 상담기관은 출생증서를 작성한

이후 가정법원에 출생증서를 제출하고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밀출산 이후의 후견개시와 입양의 지원) ① 비밀출산으로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친생모의 친권은 정지되고 후견이 개시된다. 이 경우 「민법」 제924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출산으로 출생한 영아는 「입양특례법」 제9조제2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의학적 돌봄을 받으며 입양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영아의 후견인이 된다.

③ 친생모는 비밀출산으로 출생한 영아에 대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청구인용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가정법원에 제1항에 의하여 정지된 친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비밀출산으로 영아가 출생한 직후에 상담기관은 출생증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입양기관을 통하여 영아의 입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비밀출산으로 출생한 영아의 입양정보 및 친생모의 신원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비밀출산으로 출생한 영아의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친생부의 신

- 14 -

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는 중단되고 자녀에 대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자녀의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취소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2조(벌칙) 제5조제1항,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1항, 제8조제5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베이비박스 위기영아 긴급상담

1670-5297

아·이·구·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위기에 놓인 영아와 미혼부모,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하고 있으며
세계 베이비박스 운영 국가 중 유일하게
친생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돕고 있는
한국형 베이비박스(주사랑공동체)입니다

1670-5297(아이구출) “베이비박스119”가
24시간 위기영아와 미혼부모를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인식개선 캠페인



유기된 **NO!**
Abandoned

보호된 **YES!**
Saved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진 아동”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들어야 할 말은 버려진게 아니라 “지켜지고 보호되었다”입니다.

“자커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대한민국 국회
NATIONAL ASSEMBLY